

法 士 務 稅 逸 獨

韓國稅務士會附設

韓國租稅研究所

◇ 研究責任者 ◇

崔 竣 璿(成均館大 教授・法博)

李 承 文(本研究所 研究委員・税務士)

머 리 말

최근 우리 경제는 世界化와 市場開放 그리고 實名制의 실시로 큰 變化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함께 稅政에 있어서도 金融所得綜合課稅와 所得稅申告納付制度가 도입되었다.

이와같이 급변하는 稅政與件과 경제규모의 팽창에서 발생하는 폭발적인 稅務行政需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무행정기관의 직무수행 이외에 이를 적극 뒷받침하고 납세자를 원조하는 稅務士의 活用이 필수적이며 세무사가 그 機能을 제대로 發揮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세무사법은 1961년에 제정된 이래 지난 35년간 부분적인 개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시대의 상황변화에 맞게 合理的으로 整備되지 못하여 국민이 세무사로부터 良質의 稅務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문제점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소는 우리나라 稅務士制度의 發展을 모색하고 입법에 반영시키고자 외국의 세무사법과 세무사제도의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1994년에 獨逸의 稅務代理制度, 1995년에 日本의 稅理士制度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한데 이어 이번에는 獨逸稅務士法の 조사보고서를 내게 되었다.

이러한 사업이 우리나라의 세무사법 개정에 시의적절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이 연구에 정성을 다하여 주신 崔垞璿 成均館大 教授와 본 연구소 研究委員 겸 現業에 계신 李承文 稅務士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1996. 3.

韓國租稅研究所長 申 相 式

目 次

第1部 稅務士法

第1篇 稅務代理에 관한 規定	21
第1章 稅務代理의 實行	21
第1節 適用範圍	21
第1條 適用範圍	21
第2節 資格	22
第2條 業務로서의 稅務代理資格	22
第3條 無制限 稅務代理의 資格	22
第4條 限定 稅務代理의 資格	23
第3節 禁止와 禁止命令	26
第5條 無資格者の 稅務代理 禁止	26
第6條 無資格 稅務代理禁止의 例外	26
第7條 稅務代理의 禁止命令	27
第4節 기타의 規定	27
第8條 廣告宣傳의 禁止	27
第9條 成功報酬의 約定禁止	28
第10條 義務違反에 대한 通知	28
第11條 訴訟代理人	29

第12條 記帳義務의 代行	29
第12a條 外國租稅法의 代理	30
第2章 勤勞所得稅納稅組合	30
第1節 業務	30
第13條 目的 및 業務範圍	30
第2節 認可	31
第14條 認可의 要件과 業務의 開始	31
第15條 認可管廳과 定款	32
第16條 認可手數料	32
第17條 認可證書	32
第18條 勤勞所得稅納稅組合의 名稱使用	33
第19條 認可의 失效	33
第20條 認可의 取消과 撤回	33
第3節 義務	34
第21條 記錄義務	34
第22條 業務監査	34
第23條 勤勞所得稅 稅務代理의 實行과 事務所	36
第24條 未決 勤勞所得稅事務의 處理	37
第25條 責任免除과 責任保險	38
第26條 勤勞所得稅納稅組合의 義務	38
第4節 監督	38
第27條 監督官廳	39

第28條 監督官廳에의 出頭義務와 監督官廳의 權限	39
第29條 監督官廳의 會員總會 參加	40
第30條 勤勞所得稅納稅組合 登錄簿	40
第5節 委任命令	40
第31條 勤勞所得稅納稅組合에 관한 施行規則	40
第2篇 稅務士制度	41
第1章 總則	41
第32條 稅務士, 稅務代理士 및 稅務法人	41
第33條 業務內容	41
第34條 주된 事務所와 그 외의 事務所	42
第2章 業務遂行 要件	42
第1節 人的 要件	42
第35條 試驗, 試驗免除 및 再試驗	43
第36條 應試者의 教育要件	43
第37條 기타의 應試資格 要件	45
第37a條 稅務士試驗의 內容	45
第37b條 試驗의 例外	46
第37c條 試驗의 場所의 管轄	47
第37d條 應試者의 申告	48
第38條 試驗免除 要件	49
第39條 試驗許可, 試驗 및 拘束力이 있는 回答의 手數料	50

第2節 免許	50
第40條 免許官廳과 免許節次	51
第40a條 臨時免許와 正式免許	52
第41條 稅務士의 免許證書	54
第42條 稅務代理士	54
第43條 職業名稱	54
第44條 農業帳簿管理所의 名稱使用	55
第45條 免許의 失效	56
第46條 免許의 取消 및 撤回	57
第47條 職業名稱의 使用資格 喪失	59
第48條 再免許	60
第3節 稅務法人	60
第49條 法人의 法形式, 認可官廳 및 定款	61
第50條 認可要件	61
第50a條 資本要件	62
第51條 認可手數料	63
第52條 認可證書	64
第53條 稅務法人의 名稱使用	64
第54條 認可의 失效	64
第55條 認可의 取消와 撤回	64
第4節 民法上 法人	65
第55a條 民法上 法人	65
第5節 유령經濟共同體	65

第56條 主된 事務所의 移轉	65
第3章 權利와 義務	66
第57條 職業上의 일반적인 義務	66
第58條 使用人으로서의 業務遂行	67
第59條 公法上 雇傭關係 또는 公職關係의 就任	68
第60條 自己責任性	68
第61條 財務行政에 從事하였던 者	69
第62條 補助者의 秘密嚴守義務	69
第63條 受任拒否通知	69
第64條 報酬	69
第65條 訴訟代理의 引受義務	70
第66條 文書原本	70
第67條 職業責任保險	71
第68條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71
第69條 일반적 代理人의 任命	71
第70條 業務清算人의 任命	72
第71條 業務受託者의 任命	72
第72條 稅務法人	73
第4章 職業組織	73
第73條 稅務士會	73
第74條 會員資格	74
第75條 合同稅務士會	74
第76條 稅務士會의 目的事業	74

第77條 理事會	75
第78條 定款	76
第79條 會費 및 手數料	76
第80條 稅務士會에 出頭할 義務	76
第81條 理事會의 懲戒權	76
第82條 職業裁判에 의한 決定申請	77
第83條 理事의 秘密嚴守義務	78
第84條 協議會	79
第85條 聯邦稅務士聯合會	80
第86條 聯邦稅務士聯合會의 目的事業	80
第87條 聯邦稅務士聯合會의 會費	81
第88條 國家의 監督	81
第5章 職業裁判	81
第1節 義務違反에 대한 職業裁判상의 處罰	81
第89條 義務違反에 대한 處罰	82
第90條 職業裁判의 處罰種類	82
第91條 懲戒 및 職業裁判에 의한 處罰	82
第92條 그 밖의 方法에 의한 處罰	83
第93條 義務違反의 公訴時效	83
第94條 稅務士會의 기타 所屬會員에 대한 規定	84
第2節 法院	84
第95條 地方法院의 稅務士 및 稅務代理士 事件部	84
第96條 高等法院의 稅務士 및 稅務代理士 事件部	85

第97條 聯邦大法院의 稅務士 및 稅務代理士 事件部	86
第98條 (削除)	86
第99條 陪席 稅務士 및 稅務代理士	86
第100條 陪席의 任命要件 및 拒否權	87
第101條 陪席의 解任	87
第102條 名譽職法官의 地位와 秘密嚴守義務	88
第103條 法廷 參與順位	88
第104條 名譽職法官의 報酬	89
第3節 節次規定	89
1. 總 則	89
第105條 節次에 관한 規定	89
第106條 稅務士 또는 稅務代理士의 不拘束	89
第107條 辯護	89
第108條 稅務士 또는 稅務代理士의 記錄閱覽	90
第109條 職業裁判節次와 刑罰節次 또는 過怠料節次와의 關係	90
第110條 기타의 職業裁判節次와 職業裁判權과의 關係	91
第111條 職業裁判節次의 停止	92
2. 第1審 節次	92
第112條 地域 管轄權	92
第113條 檢察廳의 協助	92
第114條 職業裁判節次의 開始	92
第115條 節次開始에 관한 法院의 決定	92
第116條 稅務士 또는 稅務代理士에 의한 職業裁判節次의	

開始申請	93
第117條 訴狀의 內容	94
第118條 公判節次의 開始에 관한 決定	94
第119條 却下決定의 確定力	95
第120條 開始決定의 送達	95
第121條 稅務士 또는 稅務代理士의 不出席 公判	95
第122條 非公開公判	96
第123條 受託法官에 의한 證據調查	96
第124條 調書의 朗讀	97
第125條 判決	97
3. 上 訴	97
第126條 抗告	98
第127條 抗訴	98
第128條 第2審에서의 檢察廳의 協助	98
第129條 上告	98
第130條 上告의 提起와 節次	99
第131條 聯邦大法院에 대한 檢察廳의 協助	100
4. 證據의 保全	100
第132條 證據保全命令	100
第133條 節次	100
5. 職務遂行 및 代理의 禁止	101
第134條 禁止의 要件	101
第135條 口頭辯論	101
第136條 禁止에 대한 票決	102

第137條 公判에 附帶한 禁止宣告	102
第138條 決定書의 送達	102
第139條 禁止의 效力	102
第140條 禁止에 對한 違反行爲	103
第141條 抗告	103
第142條 禁止의 失效	104
第143條 禁止의 取消	104
第144條 禁止의 通知	105
第145條 代理人의 任命	105
第4節 節次費用, 處罰 및 費用의 執行과 抹消	106
第146條 手數料의 免除과 支出費用	106
第147條 職業裁判節次의 開始申請 費用	106
第148條 有罪宣告를 받은 者의 費用負擔義務	106
第149條 懲戒에 對한 費用負擔義務	107
第150條 稅務士會의 責任	108
第151條 職業裁判上의 處罰 및 費用의 強制執行	108
第152條 前科抹消	108
第5節 職業裁判에 對한 適用規定; 統一條約 第3條에 規定한 地域內의 職業裁判權	109
第153條 職業裁判權에 對하여 적용할 規定	109
第6節 經過規定과 職業의 統合	110
第154條 法律施行 前에 許可를 받은 稅務士 및 稅務代理人	110
第155條 既存 法人	111

第156條 稅務代理士の 免許	113
第157條 稅務代理士の 稅務士 免許	114
第157a條 稅務士法の 第4次 改正에 의한 經過規定	116
第7節 委任命令	117
第158條 稅務士, 稅務代理士 및 稅務法人에 관한 施行令 委任	117
第3篇 强制手段과 秩序違反	118
第1章 作爲 및 不作爲를 理由로 한 執行	118
第159條 强制手段	118
第2章 秩序違反	118
第160條 無資格稅務代理	118
第161條 “稅務法人”, “勤勞所得稅納稅組合”, “農業帳簿管理所” 등의 名稱保護	119
第162條 勤勞所得稅納稅組合의 義務違反	119
第163條 組合所屬의 勤勞所得稅 稅務代理業務 從事者の 義務違反	120
第164條 節次	121
第4篇 最終規定	121
第164a條 行政節次	121
第165條 委任	121

第166條 法規의 廢止	122
第167條 自由한자同盟都市 함부르크	125
第168條 法律의 效力發生	125

第2部 稅務士法施行令

第1篇 稅務士試驗	127
第1條 許可節次	127
第2條 許可委員會의 構成	128
第3條 (削除)	128
第4條 試驗許可申請	128
第5條 그 밖의 證明	130
第6條 試驗許可	131
第7條 拘束力 있는 回答	132
第8條 試驗免除申請	132
第9條 決定의 取消 및 撤回	133
第10條 試驗委員會	134
第11條 乃至 第13條 (削除)	135
第14條 試驗의 實施	135
第15條 試驗의 評點과 平均點	135
第16條 筆記試驗	136
第17條 筆記試驗의 試驗召集 通知	136
第18條 筆記試驗의 答案作成	136
第19條 監督	137
第20條 筆記試驗 중의 行動	138
第21條 試驗의 拋棄	138

第22條 筆記試驗에 관한 記錄	139
第23條 不正行爲와 規則違反	139
第24條 筆記試驗의 評價	140
第25條 筆記試驗의 結果와 口述試驗의 排除	140
第26條 口述試驗	141
第27條 口述試驗의 評價	142
第28條 試驗의 結果와 再試驗	142
第29條 口述試驗의 不參	143
第30條 口述試驗에 관한 記錄	143
第31條 筆記試驗答案의 保存	143
第32條 (削除)	144
第33條 (削除)	144

第2篇 稅務士 또는 稅務代理士의 任命

第34條 免許節次	144
第35條 職業證書	145
第36條 免許의 失效	145
第37條 免許의 取消 및 撤回	146
第38條 再免許	146
第39條 稅務士會에 대한 通知	147

第3篇 稅務法人의 認可

第40條 節次	147
第41條 認可證書	148
第42條 稅務士會에 대한 通知	148

第4篇 農業帳簿管理所의 名稱 使用權 賦與	148
第43條 申請, 특별한 專門知識의 證明	148
第44條 賦與와 賦與證書	151
第5篇 職業登錄簿	151
第45條 登錄簿 管理機關	151
第46條 登錄	152
第47條 抹消	153
第48條 報告義務	154
第49條 農業帳簿管理所의 名稱使用權이 있는 團體, 社團 및 法人	155
第50條 申告義務	156
第6篇 職業責任保險	156
第51條 保險義務	156
第52條 最低保險金額	157
第53條 기타의 保險契約의 內容	157
第54條 다른 職業責任保險의 認可	158
第55條 免許前 保險契約締結의 證明	158
第56條 變更에 대한 申告	159
第57條 稅務士會의 監督義務	159
第7篇 經過規定 및 最終規定	160
第58條 經過規定	160
第59條 施行	160

第1部 稅務士法(Steuerberatungsgesetz)

제정	1961.	8.	25.
제1차 개정	1975.	11.	4.
제2차 개정	1976.	12.	14.
제3차 개정	1980.	9.	18.
제4차 개정	1989.	6.	9.
제5차 개정	1990.	12.	13.
제6차 개정	1992.	2.	25.
제7차 개정	1992.	12.	21.
제8차 개정	1993.	4.	27.
제9차 개정	1993.	9.	27.

第1篇 稅務代理에 관한 規定(Vorschriften über die Hilfeleistung in Steuersachen)

第1章 稅務代理의 實行(Ausübung der Hilfe in Steuersachen)

第1節 適用範圍(Anwendungsbereich)

第1條 適用範圍(Anwendungsbereich)¹⁾

① 本法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稅務代理(Hilfeleistung)에 대하여 적용한다.

1. 聯邦法과 유럽共同體法(또는 유럽경제공동체조약²⁾의 締約國法)에 규정된 租稅 및 還給金(Vergütung)에 관한 사무. 다만 聯邦財務官廳 또는 州財務官廳이 管轄하는 것에 한한다.

1) § 1 Abs. 1 Nr. 2 geänd. durch G v. 9. 6. 1989(BGBl. I S. 1062).

2) § 1 Abs. 1 Nr. 1 Klammerzusatz eingef. durch G v. 27. 4. 1993 (BGBl. I S. 512); zum Inkrafttreten siehe Anm. 4 auf S. 1.

2. 物稅 또는 不動產取得稅에 관한 사무
3. 州法 또는 州法の 위임에 따라 규정된 租稅에 관한 사무
4. 專賣物品에 관한 사무
5. 기타 연방재무관청 또는 州재무관청이 관할하는 사무. 다만 당해 사무에 관하여 연방법 또는 州법상 稅務權利救濟方法(Findnzrechtsweg)이 인정되는 것에 한한다.

② 세무대리에는 다음 각호의 대리업무를 포함한다.

1. 조세형사사건 및 조세질서위반으로 인한 過怠料事件의 대리
2. 과세에 있어 중요한 장부와 문서의 작성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대리
3. 조세환급청구권과 返還請求權의 행사에 있어서의 대리

③ 本法은 代理人과 보조자의 허가에 관한 개별적인 절차법의 적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2節 資格(Befugnis)

第2條 業務로서의 稅務代理資格(Geschäftsmäßige Hilfeleistung. Befugnis)

업무로서 하는 세무대리는 資格이 있는 個人 또는 團體만이 이를 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은 主業·副業 또는 有償·無償의 業務이든 관계없이 이를 적용한다.

第3條 無制限 稅務代理의 資格(Befugnis zu unbeschränkter Hilfeleistung in Steuersachen)³⁾

3) § 3 Abs. 2 angef. durch G v. 25. 6. 1990(BGBl. II S. 526) und neu gef. durch Vertrag v. 31. 8. 1990(BGBl. II S. 889, 970).

① 다음 각호에 계기한 者는 稅務代理業務를 할 자격이 있다.

1. 稅務士, 稅務代理士 및 稅務法人
2. 辯護士, 公認會計士, 會計法人, 宣誓會計士(vereidigte Buchprüfer) 및 宣誓會計法人

② 統一條約 제3조에 따라 1991년 1월 1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와 1991년 1월 1일 이전에 인가를 받은 稅務法人은 제40a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本法에 의하여 세무사, 세무대리사 또는 세무법인의 免許 또는 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⁴⁾

第4條 限定 稅務代理의 資格(Befugnis zu beschränkter Hilfeleistung in Steuersachen)⁵⁾

다음 각호에 계기한 者는 업무로서 한정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

1. 公證人(Notare), 다만 연방공증인법상 권한범위 내에 한한다.
2. 辦理士(Patentanwälte), 다만 변리사법상 권한범위 내에 한한다.
3. 관할권이 있는 관청 및 공공법인과 공공법인 및 영조물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 상급 監査機關(die überörtlichen Prüfungseinrichtung)
4. 타인의 재산 또는 신탁목적 및 담보목적으로 제공된 재산의 보관인 및 재산관리인. 다만 당해 재산에 관한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Nr. Vor 1.

5) § 4 Nrn. 8, 11 neu gef., Nrn. 12, 13 angef.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Nr. 9 Buchst. a geändert durch G v. 21. 12. 1992 (BGBl. I S. 2150).

5. 상업을 하는 企業家. 다만 그 기업가의 영업과 직접 관련하여 고객에게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협동조합의 감사조직과 중앙회 및 신탁기관. 다만 감사조직과 중앙회의 목적범위 내에서 그 회원에게 세무대리를 하는 것에 한한다.

7. 職域代表(Berufsvertretung) 또는 이와 유사한 근거에 의하여 구성된 社團. 다만 社團의 목적범위 내에서 그 구성원에게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연방추방법 제95조의 적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職域代表 또는 이와 유사한 근거에 의하여 구성된 농림업에 관한 團體로서 정관 목적사업이 評價法(Bewertungsgesetz)에 규정된 농림업에 대한 세무대리를 하는 단체. 다만 그 세무대리는 “農業帳簿管理所”(Landwirtschaftliche Buchstelle)의 명칭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 者를 통하여 행하는 것에 한한다. 이 경우 농업경영상 통상 발생하는 부수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적 勞動行爲 또는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업무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9. a) 運送企業. 다만 유럽경제공동체의 다른 회원국과의 물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에 대한 輸入稅 사무 또는 소비세 처리에 관한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b) 기타의 營業企業. 다만 그 기업이 通關業務와 관련된 수입세 사무를 세무대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使用者. 다만 사용자가 그 종업원의 勤勞所得稅 사무를 세무대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11. 勤勞所得稅納稅組合(Lohnsteuerhilfvereine). 다만 그組合이 그 회원의 비독립적 근로소득과 기타 그 소득세 사무에 관한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음 각호에 계기한 소득만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세액부과절차에 있어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

a) 비독립 勤勞所得(Einkünfte aus nichtselbständiger Arbeit)

b) 기타 반복되는 계속적 所得(소득세법 제22조 제1호)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

c) 資本所得. 다만 그 수입금액이 2,000 독일 마르크 이하이거나 배우자의 합산대상 자본수입금액이 4,000 독일 마르크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d) 회원이 자기가 사용하는 1가구 주택, 자기가 사용하는 소유 주택 또는 일부를 자기의 주거로 사용하는 2가구 주택의 사용임대차 및 용익임대차로부터 발생하는 歸屬所得.

세무대리가 인정되는 한 法人稅와 자본소득세의 免稅申請 또는 세액신고에 필요한 세무대리도 할 수 있다.

12. 국내 금융기관, 자본법인, 자본법인에 의하여 임명된 신탁관재인 또는 영업협동조합 및 경제협동조합. 다만 資本收入의 채권자를 대리한 소득세법상의 자본소득세의 환급 또는 법인세의 납부를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3. 공적으로 임명된 保險計理評價人(versicherungsmathematische Sachverständige). 다만 연금준비금, 보험기술준비금, 연금금고와 부조금고에의 납입금 산정과 직접 관련하여 그 위탁자에게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第3節 禁止와 禁止命令(Verbot und Untersagung)

第5條 無資格者の 稅務代理 禁止(Verbot der unbefugten Hilfeleistung in Steuersachen)⁶⁾

① 제3조와 제4조에 규정한 개인 또는 단체 이외의 者는 업무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없고, 특히 租稅事件에 있어서 업무로서 조언을 할 수 없다. 제4조에 규정한 개인 및 단체는 그 자격 내에서만 업무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

② 재무관청은 개인이나 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로서 세무대리를 행한 혐의사실을 안 경우에는 過怠料節次를 개시할 관할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第6條 無資格 稅務代理禁止의 例外(Ausnahmen vom Verbot der unbefugten Hilfeleistung in Steuersachen)⁷⁾

제5조의 세무대리금지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문적 근거에 의한 鑑定을 하고 보수를 받는 일
2. 조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親族을 위한 無料의 세무대리
3. 과세에 중요한 帳簿 및 記錄을 함에 있어서 機械的 過程을 실행하는 일. 이 경우 증거서류의 기장과 記帳指導(Buchungsanweisung)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일상적인 영업거래의 기장, 일상적인 임금계산 그리고 勤勞所得稅 신고서를 작성하는 일. 다만 소정의 조세 및 경제자문직업교육 또

6) § 5 Abs. 2 angef.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7) § 6 Nr. 2 geändert durch G v. 14. 12. 1976 (BGBl. I S. 3341), Nr. 4 angef.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는 상업직업교육을 수료한 후 졸업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그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예비교육을 받은 후 기장을 하는 기관에서 최소 3년 이상 주된 직업으로 기장실무를 한 자가 이를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第7條 稅務代理의 禁止命令(Untersagung der Hilfeleistung in Steuersachen)⁸⁾

① 稅務署長은 다음 각호에 제기한 경우에 세무대리의 禁止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 또는 제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

2.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종업원 자격으로서의 행위가 제5조의 禁止規定을 회피하기 위하여 남용되는 경우

② 재무행정을 관할하는 州最高官廳은 제4조 제7호에 규정한 단체가 그 목적에 합치되는 행위를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련 전문 州최고관청과의 협의를 거쳐 세무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에 규정한 개인이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무관청의 관할권은 禁止行爲를 한 개인 또는 단체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정하되, 보조적으로는 주된 업무가 행하여진 지역에 의한다.

第4節 기타의 規定(Sonstige Vorschriften)

第8條 廣告宣傳의 禁止(Verbot der Werbung)⁹⁾

8) § 7 Abs. 2 Satz 1 geänd.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9) § 8 Abs. 1 Satz 2 angef.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① 자기의 직무 또는 제3자의 직무를 委任에 기하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세무대리를 하기 위하여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장에서 기계적 과정의 실행(제6조 제3호 제1문 전단)과 제6조 제4호의 업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57조 제1항의 적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4조 제3호, 제7호 및 제11호에 규정한 법인과 단체는 객관적으로 필요한 業務範圍 내에서 자신의 세무대리에 관한 자격을 표시할 수 있다. 연방재무장관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法規命令으로 허용되는 표시의 방법과 내용을 상세히 규정할 수 있다.¹⁰⁾

第9條 成功報酬의 約定禁止(Verbot der Vereinbarung eines Erfolgshonorars)

세무대리의 결과로 발생하는 조세경감, 절세 또는 조세환급의 일부를 세무대리의 대가(Entgelt)로 유보하는 約定은 무효로 한다.

第10條 義務違反에 대한 通知(Mitteilungen über Pflichtverletzungen)¹¹⁾

① 재무관청이 인지한 제3조 또는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者の 직무상 義務違反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단체, 명예 재판절차, 직업재판절차 또는 懲戒節次를 개시할 권한이 있는 기관

10) VO über Art und Inhalt der zulässigen Hinweise auf die Befugnis zur Hilfeleistung in Steuersachen v. 25. 11. 1976 (Nr. 848).

11) § 10 neugef.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Abs. 2 angef. durch G v. 13. 12. 1990 (BGBl. I S. 2756).

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과 관청은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관할기관에 자연인과 법인에 관하여 필요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免許의 취소 또는 철회
2. 세무법인 또는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認可의 취소 또는 철회
3. 義務違反에 대한 직업재판상의 징계절차개시

다만 이로 인하여 보호받아야 할 당사자의 利害關係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공공의 이익은 관계자의 비밀유지이익에 우선한다. 정보제공이 특별법상의 정보이용규정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세기본법 제30조의 租稅秘密 (Steuergeheimnis)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¹²⁾

第11條 訴訟代理人(Prozeßagenten)

本法 시행전에 민사소송법 제1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서 구두변론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訴訟代理人은 本法에 의하여 계속하여 업무로서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있다.

第12條 記帳義務의 代行(Hilfeleistung bei der Erfüllung von Buchführungspflichten)¹³⁾

① 1961년 11월 1일 이전에 재무관청의 특별허가에 의하여 또는 州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記帳義務의 이행을 직업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者は 세무대리를 업무로서 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그 업무

12) Nr. 800.

13) § 12 Abs. 2 angef. durch Vertrag v. 31. 8. 1990 (BGBl. II S. 889, 970).

를 대행할 수 있다.

② 1990년 2월 7일자 임시기장대리인의 세무대리에 관한 독자적인 업무의 허가 및 등록에 관한 명령 제3조에 규정한 임시기장대리인은 소속 세무서의 관할 내에서 계속하여 업무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업무는 과세상 중요한 帳簿와 記錄의 처리에 한한다(제한된 稅務代理).¹⁴⁾

第12a條 外國租稅法の 代理(Hilfeleistung im Abgabenrecht fremder Staaten)¹⁵⁾

세무사, 세무대리사 및 세무법인은 外國租稅法の 사무에 관하여 업무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동등한 자격이 있는 제3자는 이 규정으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第2章 勤勞所得稅納稅組合(Lohnsteuerhilfvereine)

第1節 業務(Aufgaben)

第13條 目的 및 業務範圍(Zweck und Tätigkeitsbereich)

①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은 근로자가 조직한 自助機關으로서 그 소속회원의 근로소득세에 관한 세무대리를 하는 것을 그 目的으로 한다.

② 제4조 제11호 제2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세무대리도 근로소득세의 세무대리로 본다.

14) Gesetzblatt der DDR.

15) § 12 a eingef. durch G v. 13. 12. 1990 (BGBl. I S. 2756).

③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은 그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미리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2節 認可(Anerkennung)

第14條 認可의 要件과 業務의 開始(Voraussetzungen für die Anerkennung, Aufnahme der Tätigkeit)¹⁶⁾

①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은 權利能力이 있는 단체로서 정관에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p1. 協會의 업무가 오로지 그 소속 회원에 대한 勤勞所得稅만을 세무대리할 것

1. 組合의 업무가 오로지 그 소속 회원에 대한 勤勞所得稅만을 세무대리할 것

2. 단체의 주소와 업무관리가 동일한 상급 재무국의 管轄區域에 속할 것

3. 단체의 명칭이 廣告에 해당하는 아무런 구성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할 것

4. 근로소득세의 적절한 세무대리가 보장되어 있을 것

5. 근로소득세의 세무대리에 있어서 회원의 회비 이외에 특별한 報酬를 징수하지 아니할 것

6. 민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제32조 및 제33조의 각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할 것¹⁷⁾

7. 執行機構의 임원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회원총회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을 것

8. 監査結果의 중요한 내용을 회원에게 고지한 후(제22조 제7항

16) § 14 Abs. 1 Nrn. 2 und 7 eingef. durch G v. 9. 6. 1989(BGBl. I S. 1062), Satz 3 angef. durch G v. 13. 12. 1990(BGBl. I S. 2756).

17) Schönfelder Nr. 20.

제2호) 3개월 이내에 회원총회를 개최하며, 회원총회에서는 특히 업무감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진술과 감사 대상년도의 업무집행에 관한 이사의 免責을 토의할 수 있을 것

회원총회에 갈음하여 회원의 이익의 충분한 확보가 보장되는 경우 代議員會議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회의는 회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근로소득세의 세무대리에서 발생하는 責任危險(제25조 제2항)에 대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認可를 할 수 없다.

③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認可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근로소득세의 세무대리업무를 개시할 수 없다.

第15條 認可官廳과 定款(Anerkennungsbehörde, Satzung)

①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인가신청에 관한 결정은 組合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상급 재무감사국이 관할한다.

②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인가신청에는 定款의 인증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이 정관 변경을 한 경우에는 組合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상급 재무감사국에 정관 변경의 決議가 있는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第16條 認可手數料(Gebühren für die Anerkennung)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認可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00 독일 마르크의 수수료를 상급 재무감사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 수수료는 신청을 할 때 납부한다.

第17條 認可證書(Urkunde)

상급 재무감사국은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을 인가함에 있어서 認可

證書를 교부하여야 한다.

第18條 勤勞所得稅納稅組合의 名稱使用(Bezeichnung
“Lohnsteuerhilfverein”)

組合은 그 명칭에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第19條 認可의 失效(Erlöschen der Anerkennung)

① 認可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조합의 解散(Auflösung)
2. 認可의 포기(Verzicht)
3. 權利能力의 상실(Verlust)

② 인가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급 재무감사국에 서면으로 그 意思表示를 하여야 한다.

第20條 認可의 取消와 撤回(Rücknahme und Widerruf der
Anerkennung)

① 상급 재무감사국은 인가 후 認可拒否事由가 명백한 경우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상급 재무감사국은 다음의 경우에 인가를 撤回하여야 한다.

1. 組合이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인가요건을 사후에 상실한 경우. 다만 상급 재무감사국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業務執行이 제14조에서 규정한 정관의 요건과 사실상 합치하지 아니한 경우

3. 근로소득세의 세무대리를 함에 있어서 적절한 업무의 수행 또는 합법적인 業務執行이 보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③ 인가의 취소 또는 철회를 하기 전에 그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第3節 義務(Pflichten)

第21條 記錄義務(Aufzeichnungspflicht)

①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은 모든 수입과 지출을 계속하여 동시에 완전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記錄은 지체없이 독일어로 하여야 한다.

②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이 각 회원을 위하여 수령한 金錢은 협회의 재산과는 구별하여 보관하고,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은 업무개시와 매사업년도의 종료시에 당해 시점에서 조사한 재고를 기초로 그 자산가치와 부채를 기록하고 財産目錄表(Vermögenübersicht)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증거문서 및 그 외의 서류는 질서정연하게 수집하고, 6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수입과 지출의 기록 및 財産目錄表는 10년간 保存하여야 한다. 이 밖에 증거문서, 기타의 서류, 기록 및 財産目錄表의 보관에 관하여는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증거문서 및 기타의 서류의 보관에 관한 商法の 규정을 準用한다.

⑤ 記錄義務 및 장부작성의무에 관한 다른 법률의 각 규정은 이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第22條 業務監査(Geschäftsprüfung)¹⁸⁾

①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은 기장 및 財産目錄表(제21조 제1항 내지

18) § 22 Abs. 3 neugef.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Abs. 7 Nr. 1 geänd. durch G v. 13. 12. 1990 (BGBl. I S. 2756).

제3항)의 완전성 및 정확성과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정관에 정하여진 업무와 실제의 업무집행과의 일치여부에 관하여 매사업년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1인 또는 2인 이상의 업무감사인의 監査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감사인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者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無制限 稅務代理의 資格이 있는 개인과 법인

2. 소속회원의 정규감사 또는 임시감사를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監査組織으로서, 적어도 그 협회의 法定代理人(gesetzliche Vertreter) 1인이 세무사, 세무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선서회계사인 監査組織

③ 監査의 공정성에 의심이 있을 수 있는 者, 특히 감사대상인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이사회의 구성원, 特別代理人 또는 근로자인 者는 업무감사인이 될 수 없다.

④ 업무감사인에 대하여 장부와 기록 및 협회의 서신교환의 열람을 보장하고, 현금시제 및 기타 재산가치의 재고조사를 허락하여야 한다. 업무감사인이 세밀한 감사실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釋明과 證明을 하여야 한다.

⑤ 업무감사인은 성실하고 편견없는 監査 및 비밀보장의 책임을 진다. 업무감사인 자신의 직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업무상의 비밀을 무단히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자신의 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하여 근로소득세납세조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직무를 해태한 업무감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連帶責任(Gesamtschuld)을 진다.

⑥ 업무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理事會에 지

체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⑦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監査報告書의 수령 후 1개월 이내, 늦어도 사업년도 종료후 9개월 이내에 관할 상급 재무감사국에 보고서 등본을 송부하는 일
2. 감사보고서의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監査結果의 중요한 내용을 소속 회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는 일

第23條 勤勞所得稅 稅務代理의 實行과 事務所(Ausübung der Hilfeleistung in Lohnsteuersachen, Beratungsstellen)¹⁹⁾

① 근로소득세의 세무대리는 사무소에 소속된 者만이 할 수 있다. 각 사무소마다 소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소장은 동시에 다른 하나의 사무소 소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②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은 그 주소를 둔 상급재무국의 관할구역내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무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른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③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은 사무소 소장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를 임명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규정된 인적 범위에 해당하는 者
2. 조세 및 경제자문직업의 보조자시험 또는 이와 동등한 시험에 합격한 후 聯邦 또는 州 財務官廳의 行政에 속하는 조세분야에서 최소한 3년이상 본직으로 종사한 者
3. 제4조 제11호에 관련된 소득세법 분야에서 적어도 3년이상 사무원 자격으로 본직에 종사한 자. 이 경우 3년의 기간에는 教育期間

19) § 23 Abs. 1 Sätze 2 und 3, Abs. 3 Satz 2 und Abs. 6 angef., Abs. 5 geänd.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Abs. 3 Satz 1 ersetzt durch Sätze 1 und 2 sowie Abs. 4 und 5 geänd. durch G v. 13. 12. 1990 (BGBl. I S. 2756).

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0년 10월 3일 이전 등록시민으로서 그 지역의 사무소 소장으로 임명된 者는 1995년 1월 1일부터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한 者는 사무소 소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④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은 사무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상급 재무감사국에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무소의 開設과 閉鎖
2. 사무소 소장의 任免과 解任
3. 조합에서 근로소득세 세무대리업무에 종사하는 者

⑤ 사무소 소장의 임명에 관한 報告書에는 제3항의 요건이 충족 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사무소는 관할 감독관청(제27조 제2항)의 근로소득세납세조합 登錄簿에 사무소와 소장을 등록한 때로부터 그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第24條 未決 勤勞所得稅事務의 處理(Abwicklung der schwebenden Lohnsteuerangelegenheiten)

①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인가가 실효, 취소 또는 철회된 때에는 상급 재무감사국은 組合의 신청에 의하여 미결 근로소득세사무의 처리를 위한 受託者의 임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受託者는 제23조 제3항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者 중에서 임명한다.

③ 제1항의 허가는 최장 6개월간으로 할 수 있다. 허가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第25條 責任免除와 責任保險(Haftungsausschluß,
Haftpflichtversicherung)²⁰⁾

① 組合은 소속 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세무대리를 함에 있어서 조합의 기관과 사용인의 過失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組合은 근로소득세 세무대리를 함에 있어서 발생할 責任危險에 대하여 적당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법 제 158c조 제2항에 규정한 管轄官廳은 上級 財務監査局으로 한다.

③ 제68조는 이를 준용한다.

第26條 勤勞所得稅納稅組合의 義務(Pflichten der
Lohnsteuerhilfevereine)

① 근로소득세 세무대리를 함에 있어서는 적절하고, 성실하며, 비밀을 엄수하되, 廣告宣傳(Werbung, 제8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근로소득세 세무대리와 함께 다른 경제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근로소득세납세조합에 근무하는 모든 者는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한 義務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근로소득세 세무대리에 관한 서류원본은 회원의 근로소득세 사무에 대한 組合의 업무종료 후 7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4節 監督(Aufsicht)

20) § 25 Abs. 3 angef. durch G v. 13. 12. 1990 (BGBl. I S. 2756).

第27條 監督官廳(Aufsichtsbehörde)²¹⁾

① 상급 재무감사국(監督官廳)은 그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있는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을 감독한다.

② 상급 財務局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모든 사무소도 상급 재무감사국의 감독을 받는다. 감독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은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주소를 관할하는 상급 재무감사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이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이 本法의 제 규정을 위반한 혐의사실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監督官廳에 통지하여야 한다.

第28條 監督官廳에의 出頭義務와 監督官廳의 權限(Pflicht zum Erscheinen vor der Aufsichtsbehörde, Befugnisse der Aufsichtsbehörde)²²⁾

①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이사회 구성원과 組合의 근로소득세 세무대리사무에 종사하는 者는 요구가 있을 때에 監督官廳에 출두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기록 원본과 업무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급 재무감사국으로부터 監督을 위임받은 公務員은 감독업무의 수행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또는 업무시간 내에 근로소득세납세조합과 제1항에 제기한 者의 사무소에 출입할 권한을 가진다.

③ 감독관청은 사무소에 소장이 없거나 소장으로 임명된 者가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26조에 규정된 義務의 준수가 보장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무소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21) § 27 Abs. 3 neugef.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22) § 28 Abs. 3 und § 29 Abs. 1 neugef. durch G v. 1989 (BGBl. I S. 1062).

第29條 監督官廳의 會員總會 參加(Teilnahme der
Aufsichtsbehörde an Mitgliederversammlungen)

- ① 회원총회의 개최는 늦어도 2주 전에 해당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감독관청은 회원총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代表者를 파견할 수 있다.

第30條 勤勞所得稅納稅組合 登錄簿(Verzeichnis der
Lohnsteuerhilfvereine)

- ① 상급 재무감사국은 다음의 登錄簿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상급 재무구역 내에 주소를 둔 근로소득세납세조합
 2. 상급 재무감사국 관할구역 내에 있는 사무소
- ② 위의 登錄簿는 공개하여야 한다.

第5節 委任命令(Verordnungsermächtigung)

第31條 勤勞所得稅納稅組合에 관한 施行規則(Durchführungsbestimmungen zu den Vorschriften über die
Lohnsteuerhilfvereine)²³⁾

연방재무장관은 聯邦上院의 동의를 얻어 다음 사항에 관하여 法規命令을 제정할 수 있다.²⁴⁾

1.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認可節次
2.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登錄簿의 비치, 작성 및 근로소

23) § 31 Nr. 3 angef. durch G v. 13. 12. 1990 (BGBl. I S. 2756).

24)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Vorschriften über die Lohnsteuerhilfvereine (DVLStHV) v. 15. 7. 1975 (Nr. 847).

득세납세조합의 등록에 필요한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제반 申告義務

第2篇 稅務士制度(Steuerberaterordnung)

第1章 總則(Allgemeine Vorschriften)

第32條 稅務士, 稅務代理士 및 稅務法人(Steuerberater, Steuerbevollmächtigte und Steuerberatungsgesellschaften)

①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는 本法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

②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는 自由業으로서 그 직무를 행한다. 그 업무는 營業(Gewerbe)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세무법인은 認可를 받아야 한다. 認可는 세무사의 책임으로 그 법인을 운영한다는 뜻의 증명을 요한다.

第33條 業務內容(Inhalt der Tätigkeit)

세무사와 세무대리사는 위임의 범위 내에서 위임인의 稅務事務를 상담하고(berten) 위임인을 대리하며(vertreten) 세무사무의 처리 및 세법상의 義務履行에 조력하여야 한다. 조세형사사건 및 조세질서위반을 이유로 한 過怠料事件에 대한 대리 및 세법상 記帳義務의 이행(Erfüllung von Buchführungspflichten), 특히 세무대차대조표의 작성과 그에 대한 세법상의 판단에 관한 조력도 그 업무에 속한다.

第34條 주된 事務所와 그 외의 事務所 (Berufliche

Niederlassung, auswärtige Beratungsstellen)²⁵⁾

① 주된 사무소는 세무사나 세무대리사가 그 업무를 주로 집행하는 事務所를 말한다. 제58조에 의하여 고용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주된 사무소는 그 者の 정규적 근무지를, 다수의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고용된 근무지를 말한다. 주된 사무소는 설치허가 후 6개월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직업상의 義務履行에 지장이 없는 한 주된 사무소 외의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 주된 사무소외의 사무소의 소장으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의 세무사나 세무대리사만을 임명할 수 있다. 주된 사무소 외의 사무소가 유럽共同體의 다른 회원국 내에(또는 유럽경제공동체조약의 다른 체약국 내에) 존재하는 때에는 본항 제2문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統一條約 제3조에 열거된 지역 내에서는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있지 않는 세무사나 세무대리사도 주된 사무소 이외의 사무소 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²⁶⁾

第2章 業務遂行 要件(Voraussetzungen für die Berufsausübung)

第1節 人的 要件(Persönliche Voraussetzungen)

25) § 34 neugef.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Abs. 1 Satz 2 und Abs. 2 Satz 2 neugef. sowie Sätze 3 und 4 angef. durch G v. 13. 12. 1990(BGBl. I S. 2756), Abs. 1 Satz 3 angef. durch G v. 25. 2. 1992 (BGBl. I S. 297).

26) § 34 Abs. 2 Satz 3 Klammerzusatz eingef. durch G v. 27. 4. 1993 (BGBl. I S. 512); zum Inkrafttreten siehe Anm. 4 auf S. 1.

第35條 試驗, 試驗免除 및 再試驗(Prüfung, Befreiung von der Prüfung, Wiederholung der Prüfung)

①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者 또는 세무사시험을 면제받은 者만이 세무사 免許를 받을 수 있다.

② 세무사시험은 2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第36條 應試者의 教育要件(Vorbildungsvoraussetzungen für die Prüfung)²⁷⁾

① 세무사시험 응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에서 經濟學 또는 法學을 전공한 者 또는 대학의 타 학부에서 經濟學을 최소 8학기 이상 이수한 후 연방 또는 州 재무관청이 관장하는 세무실무영역에서 본직으로 3년간 종사한 者

2. 전문대학에서 經濟學을 전공한 者 또는 經濟學과 함께 타 학문을 전공하거나 이와 동등한 資格이 있는 대학교육을 이수한 후 연방 또는 州 재무관청이 관장하는 세무실무영역에서 본직으로 4년간 종사한 者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者도 세무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

1. 소정의 세무자문, 경제자문 또는 직업상인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졸업시험에 합격하거나 이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교육을 받은 후 연방 또는 州 재무관청이 관장하는 세무실무영역에서 본직으로 10년간 종사한 者

2. 稅務行政機關에 소속하고 있거나 소속하였던 公務員 또는 상

27) § 36 neugef.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Abs. 1 Nrn. 1 und 2 und Abs. 2 Nrn. 1 und 2 geänd., Abs. 3 und 4 angef. durch G v. 13. 12. 1990 (BGBl. I S. 2756).

급직 종사자로서 연방 또는 州 재무관청이 관장하는 세무영역에서 專門家 또는 적어도 그와 동등한 지위에서 최소 7년간 종사한 者.

③ 유럽共同體의 다른 회원국(또는 유럽경제공동체조약의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응시자는 유럽共同體의 다른 회원국(또는 유럽경제공동체조약의 다른 체약국) 내에서 독자적인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免許를 가진 경우에는 1988년 12월 21일 유럽共同體 준칙 (ABl. EG 1989 Nr. L 19 S. 16) 제4조 제1항 b 및 제1조 g가 정한 適性試驗에 응시할 수 있다. 適性試驗에 합격한 者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者와 동일한 자격을 취득한다.²⁸⁾

④ 제3항의 免許는 유럽共同體의 다른 회원국(또는 유럽경제공동체조약의 다른 체약국)의 관할 관청이 적어도 3년간 전문대학과정 또는 제3항에서 규정한 유럽共同體 준칙 제1조 a에 정한 교육이나 이와 동등한 교육을 받은 者에게 발급한 모든 자격증명서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자격증명서에는 유럽共同體의 다른 회원국(또는 유럽경제공동체조약의 다른 체약국)의 관할 관청이 유럽共同體의 다른 회원국(또는 유럽경제공동체조약의 다른 체약국)내에서 세무대리를 할 資格이 있음을 증명하는 모든 자격증명서를 포함한다. 직업인으로서 세무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유럽共同體의 다른 회원국(또는 유럽경제공동체조약의 다른 체약국)의 응시자는 최소 3년간 그 직업에 종사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을 받은 후 1988년 12월 21일 유럽共同體 準則(ABl. EG 1989 Nr. L 19 S. 16) 제3조 b에 따라 2년간의 전일제 직업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²⁹⁾

28) § 36 Abs. 3 und 4 Klammerzusätze eingef. durch G v. 27. 4. 1993 (BGBl. I S. 512); zum Inkrafttreten siehe Anm. 4 auf S. 1.

29) § 36 Abs. 4, § 37 Abs. 1 Nr. 1 und Abs. 3 Nr. 2 Klammerzusätze eingef. durch G v. 27. 4. 1993 (BGBl. I S. 512); zum Inkrafttreten siehe Anm. 4 auf S. 1.

第37條 기타의 應試資格 要件 (Weitere Voraussetzungen für die Prüfung)³⁰⁾

① 응시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험응시를 허가할 수 있다.

1. 本法의 효력범위 내 또는 유럽共同體의 다른 회원국(또는 유럽 경제공동체조약의 다른 체약국) 내에 그 주소가 있을 것

2. 질서있는 경제생활을 할 것

② 다음에 해당하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인적 缺格事由를 이유로 응시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형사재판에서 有罪宣告를 받아 공직담임자격을 상실하거나

2. 육체적 결함 또는 정신적 능력이 박약하여 세무사의 직업을 정상적으로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 試驗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응시자가 세무사로서 직업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행동을 한 때

2. 응시자가 독일기본법 제116조 제1항이 정한 독일인 또는 유럽共同體의 다른 회원국(또는 유럽경제공동체조약의 다른 체약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 이 경우 1951년 4월 25일 자의 무국적 외국인의 法的 地位에 관한 法律(연방법률공보 제1부 269면) 및 다른 條約의 적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第37a條 稅務士試驗의 內容 (Inhalt der Steuerberaterprüfung)³¹⁾

30) § 37 Abs. 1 neu gef. und Abs. 3 Nr. 2 geändert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31) § 37a eingef. durch G v. 13. 12. 1990 (BGBl. I S. 2756).

① 응시자는 試驗에 응시하여 세무사의 직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시험은 3과목의 筆記試驗과 口述試驗으로 구분한다. 시험은 재무행정을 관할하는 州 최고관청이 구성한 試驗委員會가 이를 행한다. 필요에 따라 다수의 시험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③ 세무사시험의 試驗分野는 아래와 같다.

1. 租稅節次法(Steuerliches Verfahrenrecht)
2. 收得稅(Ertragsteuern)
3. 財産稅(Besitzsteuern)
4. 消費稅와 流通稅(Verbrauch- und Verkehrsteuern)
5. 民法 및 經濟法 概論(Grundzüge des Bürgerlichen Rechts und des Wirtschaftsrechts)
6. 經營學 및 會計制度(Betriebswirtschaftslehre und Rechnungswesen)
7. 國民經濟(Volkswirtschaft)
8. 職業法(Berufrecht)

第37b條 試驗의 例外(Prüfung in Sonderfällen)³²⁾

① 公認會計士와 宣誓會計士는 신청에 의하여 略式稅務士試驗에 응할 수 있다. 약식시험에서는 제37a조의 제3항 제5호와 제6호의 試驗科目을 생략한다.

② 제36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適性檢査를 통하여 세무사로서의 직업을 독일기본법이 적용되는 영역 내에서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適性檢査는 직업수행상

32) § 37b und 37c eingef. durch G v. 13. 12. 1990 (BGBl. I S. 2756).

필수적인 法律知識으로서 제37a조 제3항에 규정한 과목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국립대학, 국가가 인정한 대학, 전문대학 또는 동등한 수준의 다른 교육기관의 碩士學位 또는 이와 동등한 시험증명서로써 1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그 과목에서 필요한 지식의 주요 부분을 습득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과목면제는 시험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③ 약식시험과 적성검사는 2과목의 筆記試驗과 口述試驗으로 행한다.

④ 약식시험과 적성검사는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사시험규정을 적용한다.

第37c條 試驗의 場所의 管轄(Örtliche Zuständigkeit für die Prüfung)

① 시험위원회의 장소적 관할은 응시원서를 제출할 당시 응시자가 주 직업으로 활동하는 주소에 의한다. 응시자가 주된 직업으로 활동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은 그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수의 주소가 있는 때에는 응시자가 주로 체류하는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

② 주된 직업으로 활동하는 장소 또는 그에 대신하는 주소가 本法의 적용영역 내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곳에 그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이탈리아 (그리고 오스트리아) 출신의 응시자는 자유도시 바이에른 시험위원회³³⁾

33) § 37c Abs. 2 Nrn. 1 und 2 Klammerzusätze sowie Nrn. 9 und 10 eingef., bish. Nr. 9 wird Nr. 11 durch G v. 27. 4. 1993 (BGBl. I S. 512), geändert durch G v. 27. 9. 1993, BGBl. I S. 1666; zum Inkrafttreten siehe Anm. 4 auf S. 1.

2. 그리스 (그리고 리히텐슈타인) 출신의 응시자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시험위원회

3. 스페인과 포르투갈 출신의 응시자는 헤센주 시험위원회

4. 영국과 아일랜드 출신의 응시자는 니더작센주 시험위원회

5. 벨기에와 네덜란드 출신의 응시자는 놀트라인-베스트팔렌주 시험위원회

6. 프랑스 출신의 응시자는 라인란트와 팔츠주 시험위원회

7. 룩셈부르크 출신의 응시자는 잘란트 시험위원회

8. 덴마크 출신의 응시자는 쉴레스비히-홀스타인주 시험위원회

9. 핀란드와 아일랜드 출신의 응시자는 베를린주 시험위원회

10. 노르웨이와 스웨덴 출신의 응시자는 자유 한자동맹도시 함부르크 시험위원회

11. 그 밖의 응시자에 대하여는 주된 事務所를 두고자 하는 州를 관할하는 시험위원회.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관할권은 시험에 대한 許可節次와 試驗免除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第37d條 應試者の 申告(Angaben des Bewerbers)³⁴⁾

시험위원회의 시험허가 결정은 제158조 제1항 제a호에 규정한 서식을 근거로 하여 판단한다. 각종 證明書는 공식적인 서식규정에 맞게 제출하여야 한다. 응시자는 그 서류를 시험허가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4) § 37d eingef. durch G v. 13. 12. 1990 (BGBl. I S. 2756).

第38條 試驗免除 要件(Voraussetzungen für die Befreiung von der Prüfung)³⁵⁾

① 다음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세무사시험을 면제한다.

1. 독일대학에서 최소 10년간 연방 또는 州 재무관청이 관장하는 조세분야에서 강의를 담당하였던 教授

2. 최소 10년간 연방 또는 州 재무관청이 관할하는 조세분야에서 활동하였던 전직 조세사건 담당 判事

3. 전직 高位公務員 및 공직 종사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者

a) 적어도 10년간 연방 또는 州 재무관청이 관할하는 조세분야에서 담당과장 또는 적어도 동등한 지위에서 활동한 세무공무원

b) 연방 및 州의 입법기관, 最高會計監査院 및 그 밖의 연방 또는 州 최고관청에서 최소 10년 이상 주로 연방 또는 州 재무관청이 관할하는 조세분야에서 담당과장 또는 적어도 이와 동등한 지위에서 활동한 者. 독일연방하원의 각 정당 소속 직원은 이 규정에서 말하는 입법기관의 직원으로 본다.

4. 전직 高位公務員 및 공직 종사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者

a) 적어도 15년간 연방 또는 州 재무관청이 관할하는 조세분야에서 담당관 또는 적어도 동등한 지위에서 활동한 세무공무원

b) 연방 및 州 입법기관, 조세법원, 最高會計監査院 및 최고관청에서 최소 15년이상을 주로 조세분야의 담당관 또는 적어도 이와 동등한 지위에서 활동한 者. 독일연방하원의 각 정당 소속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한 입법기관의 직원으로 본다.

35) § 38 Abs. 1 Nr. 1 und Abs. 2 Satz 2 neugef. durch G v. 9. 6. 1989 (BGBl. I S.1062), Abs. 1 und Abs. 2 Satz 1 geänd. durch G v. 13. 12. 1990 (BGBl. I S. 2756).

② 시험허가에 관한 제37조 및 제37d조의 규정은 試驗免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者 및 공무원 교육과정인 國家行政教育專門學校의 教授는 공직에서 퇴직한 후 또는 독일연방하원의 각 정당의 소속직원으로서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試驗을 면제 받을 수 없다.

第39條 試驗許可, 試驗 및 拘束力이 있는 回答의 手數料

(Gebühren für Zulassung, Prüfung und verbindliche Auskunft)³⁶⁾

① 응시자가 시험허가신청 또는 시험면제신청에 대한 결정과 시험허가 또는 시험면제의 각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拘束力이 있는 回答을 얻기 위하여는 200 독일 마르크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납부한다.

② 응시자는 시험에 대하여 면허관청이 지정한 기일까지 750 독일 마르크의 응시료를 면허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응시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응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응시자는 試驗許可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응시자가 면허관청이 지정한 기일까지 수험을 포기할 경우에는 응시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응시자가 최종 필기시험 종료 전까지 포기할 경우에는 應試料의 반액을 반환한다.

第2節 免許(Bestellung)

36) § 39 Überschrift und Abs. 1 Satz 1 neugef. sowie Abs. 2 Sätze 1, 3 und 4 geänd.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第40條 免許官廳과 免許節次(Bestellende Behörde,
Bestellungsverfahren)³⁷⁾

① 시험에 합격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따라 재무행정을 관할하는 州최고관청이 세무사의 免許를 부여한다. 면허수여관청의 지역적 管轄權은 응시자가 설치를 희망하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관청으로 한다. 응시자가 유럽共同體의 다른 회원국(또는 유럽경제 공동체조약의 다른 체약국) 내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사시험을 주관한 시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이 免許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³⁸⁾

② 免許를 수여하기 전에 免許官廳은 시험허가에 대한 人的 要件(제37조)을 여전히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免許를 거부하여야 한다.

1. 응시자의 시험허가를 거부, 철회 또는 취소하였어야 할 사실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

2. 응시자가 그 직업에 상당하지 않는 업무를 하는 경우(제57조 제4항)

3. 職業責任保險의 청약에 관하여 잠정적인 付保의 確約(Deckungszusage)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④ 免許는 응시자의 시험허가를 거부,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었던 사실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에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⑤ 免許를 拒否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응시자의 意見を 들어야 한다. 免許의 拒否는 이를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각 규정은 시험을 면제받는 응시자의 免許

37) § 40 neu gef.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38) § 40 Abs. 1 Satz 3 Klammerzusatz eingef. durch G v. 27. 4. 1993 (BGBl. I S. 512); zum Inkrafttreten siehe Anm. 4 auf S. 1.

許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第40a條 臨時免許와 正式免許(Vorläufige Bestellung,

Voraussetzungen für die endgültige Bestellung)³⁹⁾

① 독일민주공화국의 세무사법을 근거로 1990년 2월 6일 이후에 免許를 받은 세무사와 세무대리사는 統一條約의 제3조가 정한 지역에서 임시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임시면허를 가진 세무대리사는 免許를 받은 州에서 무제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 臨時免許를 가진 세무사와 세무대리사는 관할 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세미나(초급과정과 중급과정)를 수료한 경우에 정식 세무사 免許를 받을 수 있다. 초급 세미나과정만 수료한 임시면허 세무사와 임시면허 세무대리사는 세무대리사의 正式免許를 받을 수 있다. 正式免許는 제46조 제1항 제2문에 의하여 臨時免許 취소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부여할 수 있다. 臨時免許는 늦어도 1997년 12월 31일자로 소멸한다. 제1문 내지 제5문은 1990년 2월 7일 이전에 이미 세무대리인으로서 認可를 받았거나 또는 本法에 의하여 免許를 받은 세무사와 세무대리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세미나는 초급과정은 120시간, 중급과정은 40시간으로 하되, 다음 과목에 관하여 교육한다.

1. 초급과정

a) 租稅節次法

b) 收得稅

c) 買上稅와 去來稅(Umsatzsteuer, Verkehrsteuern)

39) § 40a eingef. durch Vertrag v. 31. 8. 1990 (BGBl. II S. 889, 970), bish. Text wird Abs. 1 und neugef., Abs. 2 bis 7 angef. durch G v. 25. 2. 1992 (BGBl. I S. 297).

- d) 財産稅
- e) 民法 및 經濟法 概論
- f) 職業法

2. 中급과정

- a) 法人稅(Körperschaftsteuer)
- b) 租稅法院法(Finanzgerichtsordnung)

세미나 수강생의 정원은 40명으로 한다.

③ 세미나는 제79조 제2항의 세무사회의 特別事業으로 한다.

④ 세미나의 수강생은 그 수료 전에 세미나위원회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험은 筆記試驗과 口述試驗으로 한다. 口述試驗은 초급과정에, 筆記試驗은 중급과정에 대하여 실시한다. 시험 과목은 제2항에 열거한 분야에서 선택한다.

⑤ 상급재무국 관할 구역별로 세미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세미나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재무행정청이 임명한 公務員 또는 전직 公務員 2인, 그 중 고위직 종사자가 委員長이 된다.

2. 正式免許가 있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 2인. 상급재무국 관할구역 내에 다수의 세미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세미나위원회는 재무행정을 관할하는 州최고관청의 동의를 얻어 다른 상급 재무감사국의 응시자에 대한 시험을 대행할 수 있다.

⑥ 응시자는 재무행정을 관할하는 州최고관청에 그 관청이 정한 기한까지 500 독일 마르크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⑦ 연방재무장관은 연방세무사회의 의견과 연방上院의 동의를 얻어 다음 사항에 대한 法規命令을 제정할 수 있다.⁴⁰⁾

40) VO zur Durchführung des § 40 a des Steuerberatungsgesetzes v. 25. 9. 1992 (Nr. 846).

1. 세미나과목의 세목
2. 세미나 및 시험의 시행절차
3. 세미나위원회 위원의 임명절차
4. 臨時免許를 받은 세무대리사의 주된 사무소를 다른 州로의 이전 및 그 이전요건과 관련된 상급 재무감사국의 承認

第41條 稅務士の 免許證書(Berufsurkunde)⁴¹⁾

- ① 응시자는 세무사의 免許證書를 교부받는 때로부터 세무사의 免許를 취득한다.
- ② 세무사는 그 免許證書를 교부받기 전에 재무행정을 관할하는 州최고관청에 세무사로서의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뜻의 保證書を 제출하여야 한다.

第42條 稅務代理士(Steuerbevollmächtigter)

세무대리사는 本法에 의하여 세무대리사 免許를 받은 者이다.

第43條 職業名稱(Berufsbezeichnung)⁴²⁾

- ① 직업명칭은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라고 한다. 여성은 여성세무사 또는 여성세무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업 세무사는 직업상의 거래에 있어서 상기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그 밖의 직업명칭은 그 명칭이 관청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직업상의 거래에는 그 밖의 부가적인 명칭 및 전 관직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1) § 41 Abs. 2 geändert.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42) § 43 Abs. 1 Satz 2 eingef.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③ 學位 또는 국가가 수여한 칭호를 표시하는 부가적인 名稱의 사용은 허용된다.

④ “세무사”, “세무대리사” 또는 “稅務法人”의 명칭은 本法에 의하여 資格이 있는 者만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稅務代理業務를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밖의 명칭 사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문의 규정은 변호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44條 農業帳簿管理所의 名稱使用(Bezeichnung

“Landwirtschaftliche Buchstelle”)⁴³⁾

① 評價法상 농림업에 대한 세무대리영역에서 특별한 專門知識이 있는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에게 그 신청에 의하여 “농업장부관리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資格을 부여할 수 있다. 이 資格은 신청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재무행정을 관할하는 州최고관청에서 이를 부여한다.

② 제1항 제1문의 특별한 專門知識은 전문지식위원회가 口述試驗으로 이를 평가한다. 전문지식위원회는 위원장으로서 재무행정 代表者 1인, 농업을 관할하는 州최고관청의 代表者 1인 또는 그 관청이 임명한 농업회의소의 代表者 1인 및 신청자가 소속한 세무사회의 대표자 1인으로 구성한다. 제1항 제1문의 專門知識의 평가와 관련한 전문교육을 받고 3년 이상의 장부를 작성한 농림업세무대리를 한 者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口述試驗을 면제할 수 있다. 免除의 신청에 관하여는 재무행정을 관할하는 州최고관청이 농업을 관할하는 州최고관청 및 신청자의 주된 事務所를 관할하는 세무사회와 협의하

43) § 44 Abs. 1 Satz 2 und Abs. 4 neugef., bish. Abs. 2 wird Abs. 9 und geänd.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여 이를 결정한다.

③ 세무법인은 적어도 1인의 法定代理人이 그 직업 명칭에 부가하여 “농업장부관리소”의 명칭을 사용할 資格을 가진 경우, 그 法人의 명칭에 부가하여 “농업장부관리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④ 本法 제4조 제8호에 정한 단체는 “농업장부관리소”라는 명칭을 단체의 명칭에 부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농업장부관리소를 유지하고 있는 공법상 法人(제4조 제3호) 및 제4조 제7호에 규정한 社團은 장부관리소의 장이 그 직업 명칭에 부가하여 “농업장부관리소”의 명칭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 경우 당해 장부관리소에 “농업장부관리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할 시점에서 “농업장부관리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가 당해 자격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의 효력발생 후 6개월 내에 免許官廳에 이를 증명할 경우 당해 명칭을 직업 명칭에 부가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⑦ “농업장부관리소”라는 명칭의 사용자격은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로서의 免許가 실효, 취소 또는 철회되면 소멸한다.

⑧ “농업장부관리소”라는 명칭의 使用資格이 있는 者は 職業登錄簿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⑨ “농업장부관리소”라는 명칭의 사용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300 독일 마르크의 手數料를 재무행정을 관할하는 州최고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는 신청서 제출시에 납부한다.

第45條 免許의 失效(Erlöschen der Bestellung)⁴⁴⁾

44) § 45 Abs. 1 Nr. 2 neu gef.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①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로서의 免許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실효한다.

1. 死亡(Tod)
2. 제46조 제4항 제1문 내지 제4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관청에 대한 포기(Versicht)
3. 확정력있는 資格剝脫(rechtskräftige Ausschluss aus dem Beruf)

② 세무대리사 免許는 세무사의 免許를 받으면 실효한다.

第46條 免許의 取消 및 撤回(Rücknahme und Widerruf der Bestellung)⁴⁵⁾

① 免許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시험허가, 시험면제 또는 免許를 사기, 강박 또는 뇌물에 의하여 또는 중요한 표시에 있어서 부정확 또는 불완전한 기재를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臨時免許(제40a조)는 그것이 위법이거나 그 취득자가 違法事實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만 할 경우, 또는 免許가 그 물적 관할이 없는 관청에서 발급되고 관할 관청에서 그 면허를 발급하지 않았으리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② 免許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한다.

1. 그 주소를 유럽共同體의 회원국(또는 유럽경제공동체조약의

45) § 46 Abs. 2 Nr. 1, Abs. 3 und Abs. 4 neugef., Abs. 2 Nrn. 4 bis 7 angef. und Abs. 5 aufgeh.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Abs. 2 Nr. 1 neugef. durch G v. 25. 6. 1990 (BGBl. II S. 518); Abs. 1 Satz 2 angef. und Abs. 2 Nr. 1 neugef. durch G v. 25. 2. 1992 (BGBl. I S. 297).

체약국)이 아닌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⁴⁶⁾

2.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직업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사용인으로서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3. 형사법원의 有罪判決에 의하여 공직담임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직무수행으로부터 발생할 責任危險에 대하여 지정된 責任保險(Hauptpflichtversicherung)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5.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그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

6. 파산한 경우. 다만 파산으로 인하여 委任人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파산법원과 집행법원이 작성한 名簿(파산법 제107조 제2항,⁴⁷⁾ 민사소송법 제915조⁴⁸⁾)에 등재된 경우에는 破産으로 추정한다.

7. 그 주된 事務所를 외국으로 이전할 경우

③ 免許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한다.

1. 免許 후 6개월 이내에 주된 事務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체적 결함 또는 정신박약으로 인하여 장기간 그 직업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④ 세무사 免許는 재무행정을 관할하는 州최고관청이, 세무대리사 免許는 상급 재무감사국이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한다. 지역적 관할권은 주된 事務所의 관할에 따라 정하고,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려고 예정하였던

46) § 46 Abs. 2 Nr. 1 Klammerzusatz eingef. durch G v. 27. 4. 1993 (BGBl. I S. 512); zum Inkrafttreten siehe Anm. 4 auf S. 1.

47) Schönfelder Nr. 110.

48) Schönfelder Nr. 100.

장소에 따라 정한다. 제40조 제1항 제3문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유럽共同體의 회원국(또는 유럽경제공동체조약의 체결국)⁴⁹⁾이 아닌 국가에 소재하는 주된 사무소에 대한 지역적 관할권은 本法의 적용 범위 내에서 소재하였던 최후의 주된 사무소에 따라 정한다. 최후의 주된 사무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게 免許를 준 관청에서 지역적 관할권을 가진다. 취소 또는 철회 전에 그 본인 및 세무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삭제

第47條 職業名稱의 使用資格 喪失(Erlöschen der Befugnis zur Führung der Berufsbezeichnung)⁵⁰⁾

① 면허의 失效, 取消 또는 撤回에 의하여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라는 직업 명칭을 사용할 자격을 상실한다. 종전의 자격을 표시하는 부가적인 名稱도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제46조 제4항 제1문 내지 제4문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청은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고령 또는 신체적 장애를 원인으로 하여 면허의 權利를 포기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회의 의견을 들어 계속하여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명칭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문의 허가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100 독일 마르크의 手數料를 제46조 제4항 제1문 내지 제4문의 규정에 따라 관할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는 신청서 제출시에 납부한다.

③ 제46조 제4항 제1문 내지 제4문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청

49) § 46 Abs. 4 Satz 4 Klammerzusatz eingef. durch G v. 27. 4. 1993 (BGBl. I S. 512); zum Inkrafttreten siehe Anm. 4 auf S. 1.

50) § 47 Abs. 2 und Abs. 3 neugef.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은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 대한 免許의 失效, 取消 또는 撤回事由를 사후에 알았거나 그 사유가 사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 제1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한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그 허가의 取消와 撤回 전에 본인과 세무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第48條 再免許(Wiederbestellung)⁵¹⁾

① 前職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再免許를 받을 수 있다.

1.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免許가 실효된 경우
2. 제4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免許失效의 경우에 확정력 있는 資格剝脫이 사면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확정력 있는 資格剝脫 후 최소 8년이 경과한 경우
3.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免許가 취소 또는 철회되고, 取消 또는 撤回事由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40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再免許에 준용한다.

③ 再免許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신청자는 200 독일 마르크의 수수료를 면허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는 再免許 신청서 접수시에 납부한다.

第3節 稅務法人(Steuerberatungsgesellschaft)

51) § 48 Abs. 1 Nr. 2 und 2 neugef., Abs. 3 angef. durch G v. 9. 6. 1989 (BGBl. I S.1062), Abs. 1 Satz 2 angef. durch G v. 25. 2. 1992 (BGBl. I S. 297).

第49條 法人의 法形式, 認可官廳 및 定款(Rechtsform
der Gesellschaft, Anerkennungsbehörde,
Gesellschaftsvertrag)⁵²⁾

①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는 本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稅務法人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는 당해 법인이 그 신탁업무로 인하여 상
사회사로서 商業登記簿에 등기를 한 경우에 稅務法人으로 인가를 받
을 수 있다.

③ 세무법인의 認可申請에 관하여는 그 법인의 본점소재지 재무
행정을 관할하는 州최고관청이 그 認可 여부를 결정한다.

④ 세무법인의 인가신청서에는 定款의 정본 또는 인증등본을 첨
부하여야 한다. 定款의 변경 또는 대표자의 변경은 재무행정을 관할
하는 州최고관청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신고는 각 認可
書의 인증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변경사항이 商業登記簿에 등기된
때에는 登記簿의 인증등본도 제출하여야 한다.

第50條 認可要件(Voraussetzungen für die Anerkennung)⁵³⁾

① 법인의 理事會 構成員, 業務執行社員 또는 無限責任社員이
세무사인 경우에만 稅務法人의 인가를 할 수 있다. 세무사, 이
사회의 구성원, 업무집행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 중 최소 1인
의 주된 事務所가 법인의 본점소재지 또는 그 인접지에 소재하
여야 한다.

52) § 49 Abs. 1 und Abs. 3 geändert., Abs. 4 Satz 2 neu gef. sowie Sätze
3 und 4 angef.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53) § 50 Abs. 1 und Abs. 3 Satz 1 neu gef., Abs. 6 angef.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Abs. 1 Satz 2 geändert. durch G v.
13. 12. 1990 (BGBl. I S. 2756).

② 세무사 외에도 辯護士, 公認會計士, 宣誓會計士 및 세무대리사도 稅務法人의 이사회의 구성원, 업무집행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③ 재무행정을 관할하는 州최고관청은 세무사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제3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專門分野 이외의 영역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특수한 능력이 있는 者가 세무사와 같이 稅務法人의 이사회 구성원, 업무집행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의 지위에 취임하는 것을 許可할 수 있다. 허가는 특수한 專門知識을 갖추고 있지 못하거나 인적 信賴性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이사회의 구성원, 업무집행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의 數는 이사회의 구성원인 세무사, 업무집행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인 稅務士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는 記名式株式을 발행하여야 한다. 법인의 승인이 없으면 株式을 양도하지 못한다. 유한회사의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도 제2문과 같다.

⑥ 직업책임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잠정적인 付保의 確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認可를 할 수 없다.

第50a條 資本要件(Kapitalbindung)⁵⁴⁾

① 다음 각호에서 열거하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된 경우에만 稅務法人의 인가를 할 수 있다.

1. 모든 社員이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선서회계사, 세무대리사 또는 제50조 제3항이 규정한 이사회의 구성원, 업무집행사원

54) § 50a eingef.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Abs. 1 Nr. 6 geänd. durch G v. 13. 12. 1990 (BGBl. I S. 2756).

또는 무한책임사원의 職에 취임하였을 것

2. 제3자의 계산으로 세무법인의 持分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을 것
3. 물적회사인 경우에는 持分이 제1호에 정한 者에게 귀속될 것
4.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商業登記簿에 등기된 出資를 제1호에 규정한 者가 인수하였을 것
5.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의 주주, 유한회사 또는 합자회사 사원의 議決權의 다수가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선서회계사 또는 세무대리사에게 귀속하고 있을 것
6. 법인의 정관에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선서회계사 또는 세무대리사인 社員만이 법인의 權利行使代理權이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을 것

②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者가 그 목적이 오로지 세무법인의 持分の 보유에 있는 민법상 組合에 가입한 경우에 그 者의 세무법인의 持分은 그 者의 민법상 組合의 持분에 비례한다. 財團 또는 등기된 社團이 오로지 세무법인에서 활동하는 者의 노력자 관리 및 그 유족에 대한 원조를 하고 그 法定代理人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합치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 제1호의 직에 속하는 者로 본다.

第51條 認可手数料(Gebühren für die Anerkennung)⁵⁵⁾

① 법인은 세무법인의 인가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재무행정을 관할하는 州최고관청에 750 독일 마르크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제50조 제3항에 의한 예외적 인가신청에 관한 결정에

55) § 51 Abs. 1 und 2 geändert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대하여 재무행정을 관할하는 州최고관청에 300 독일 마르크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수료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납부한다.

第52條 認可證書(Urkunde)⁵⁶⁾

稅務法人을 인가하는 경우 재무행정을 관할하는 州최고관청은 認可證書를 교부하여야 한다.

第53條 稅務法人의 名稱使用(Bezeichnung
“Steuerberatungsgesellschaft”)

세무법인은 그 상호에 “稅務法人”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第54條 認可의 失效(Erlöschen der Anerkennung)

① 認可는 다음의 경우에 失效한다.

1. 법인의 解散
2. 認可의 포기

② 認可의 포기는 재무행정을 관할하는 州최고관청에 서면으로 그 意思表示를 하여야 한다.

第55條 認可의 取消와 撤回(Rücknahme und Widerruf der Anerkennung)

① 재무행정을 관할하는 州최고관청은 認可를 거부하였어야 할 사정이 認可 후 밝혀진 때에는 그 認可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재무행정을 관할하는 州최고관청은 세무법인의 인가 후 認可

56) § 52, § 54 Abs. 2 und § 55 Abs. 1 geändert., Abs. 2 und 3 neu gef.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要件에 缺格事由가 생긴 경우에는 그 法人의 認可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재무행정을 관할하는 州최고관청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법률에 적합한 상태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相續으로 인하여 제50a조에 열거한 資格要件에 缺格事由가 생긴 경우에는 위 기간은 최소 5년으로 한다.

③ 取消 또는 撤回 전에 그 세무법인 및 세무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第4節 民法上 法人(Gesellschaft bürgerlichen Rechts)

第55a條 民法上 法人(Gesellschaft bürgerlichen Rechts)⁵⁷⁾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는 민법상 法人의 형태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0조 제2항은 이를 준용한다. 민법상 법인의 설립 및 법인조직 변경은 관할 세무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第5節 유럽經濟共同體(Europäische Wirtschaftsgemeinschaft)

第56條 主된 事務所의 移轉(Verlegung der beruflichen Niederlassung)⁵⁸⁾

제46조 제2항 제1호 및 제7호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그 주된 사무소를 다른 국가로 이전하고 본법의 적용범위 내에 주소를 갖는 送達代理人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성명, 주소 및 모든 人的事項의 변경과 送達代理人의 주소의 변경은 세무

57) § 55a eingef. durch G v. 13. 12. 1990 (BGBl. I S. 2756).

58) § 56 neugef.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Satz 1 neugef. durch G v. 13. 12. 1990 (BGBl. I S. 2756)

사회 및 관할관청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그가 지금까지 소속하였던 세무사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第3章 權利와 義務(Rechte und Pflichten)

第57條 職業上의 일반적인 義務(Allgemeine Berufspflichten)⁵⁹⁾

①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는 그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 獨立性을 유지하며(unabhängig) 자기의 책임하에(eigenverantwortlich) 성실히 임하고(gewissenshafte), 秘密을 嚴守하며(verschwiegen), 직업의 품위에 반하는 廣告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는 그의 직업 또는 직업의 品位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안된다.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는 직무수행 이외에 있어서도 그 직업이 요구하는 신뢰와 존경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활동은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직업과 특히 일치한다.

1. 공인회계사 또는 선서회계사
2. 相談을 포함하여 타인의 이익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직업活動(freiberufliche Tätigkeit)
3. 경영자문, 감정 또는 수탁 및 財産目錄과 損益計算書의 법규정 준수에 대한 證明書의 교부
4. 대학, 研究所 및 전문대학의 教授. 다만, 국가행정기관이 직접

59) § 57 Abs. 3 Nr. 4 angef.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Abs. 4 Nr. 2 geänd. durch G v. 18. 8. 1980 (BGBl. I S. 1537).

운영하는 공무원교육과정인 전문학교의 敎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자유저작 및 자유로운 강연과 敎育

④ 특히 다음의 각호에 열거한 활동은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의 職業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1. 營業行爲(gewerbliche Tätigkeit)
2. 제3항 제4호 및 제58조와 제59조의 경우를 제외한 사용인으로서의 업무수행(Tätigkeit als Arbeitnehmer)

第58條 使用人으로서의 業務遂行(Tätigkeit als Angestellter)⁶⁰⁾

①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는 다른 세무사, 세무대리사 또는 세무법인의 使用人으로서 그 業務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는 다음의 각호에 계기한 업무를 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선서회계사, 경영감사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사용인으로서의 업무수행
2. 협동조합의 감사조직 및 신탁기관 또는 공법상 단체 및 시설에 대한 상급지역 감사조직의 책임자 또는 사용인으로서의 업무수행
3.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帳簿管理所 또는 사무소 소장으로서의 업무수행
4. 장부관리소 또는 사무소가 1인의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帳簿管理所 또는 사무소의 사용인으로서의 업무수행

60) § 58 Abs. 2 Nrn. 5 und 6 angef. durch G v. 18. 8. 1980 (BGBl. I S. 1537).

5. 다음의 각호에 열거한 협동조합 또는 기타의 社團의 使用인으로서의 업무수행

- a) 모든 구성원이 제3조가 정한 개인 및 법인인 경우
- b) 주요 目的이 그 구성원이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구성원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의 경영에 있는 경우

6. 세무사회의 使用인으로서의 업무수행(제73조, 제85조)

第59條 公法上 雇傭關係 또는 公職關係의 就任(Steuerberater oder Steuerbevollmächtigte im öffentlichrechtlichen Dienst- oder Amtsverhältnis)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선거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公務員으로서 선출되어 공법상의 고용관계 또는 公職에 취임한 경우에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로서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受任事務를 명예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문의 경우에도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로서 직업상의 일반적인 義務를 준수함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관할 세무사회는 신청에 의하여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代理人을 임명하거나 그 직무를 스스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第60條 自己責任性(Eigenverantwortlichkeit)

① 다음 각호에 제기한 者만이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책임하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독립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
- 2. 세무사, 세무대리사 또는 세무법인의 서명권한이 있는 代表者
- 3. 제58조에 따라 署名權을 갖고 세무대리를 하는 使用인

② 署名權이 있는 대표자 또는 使用인으로서 그 義務에 따른 行爲

(제57조)를 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者는 제 1항 제2호 및 제3호가 정하는 자기 책임하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者로 보지 아니한다.

第61條 財務行政에 從事하였던 者(Ehemalige Angehörige der Finanzverwaltung)

세무행정에서 종사하였던 公務員 및 사용인은 공직으로 부터 퇴직한 후 3년간은 퇴직 직전 3년 이내에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던 세무 업무에 관하여 委任人을 위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

第62條 補助者의 秘密嚴守義務(Verschwiegenheitspflicht der Gehilfen)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는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가 아닌 그 補助者로 하여금 비밀을 지키도록 할 의무가 있다.

第63條 受任拒否通知(Mitteilung der Ablehnung eines Auftrags)

직업상 시간의 부족으로 委任業務를 인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는 즉시 그 거절의 意思表示를 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의사표시를 지체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損害를 배상하여야 한다.

第64條 報酬(Gebührenordnung)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는 연방재무장관이 聯邦上院의 동의를 얻어 法規命令으로 공포한 報酬規程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연방재무장관은 연방세무사연합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⁶¹⁾ 보수금액

은 적당한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시간의 소비
2. 목적물의 가격
3. 업무의 종류

第65條 訴訟代理의 引受義務(Pflicht zur Übernahme einer Prozeßvertretung)⁶²⁾

세무사는 租稅法院에서 수행하는 訴訟에 관하여 조세법원법 제 142조에 의하여 잠정적이고 무보수로 소송당사자의 權利를 실현하도록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訴訟當事者の 代理人地位를 인수하여야 한다. 세무사는 이에 대하여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第66條 文書原本(Handakten)

①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委任 종료 후 7년간 관련문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의무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委任人에게 문서를 수령할 것을 요구하고 委任人이 6개월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 전에도 소멸한다.

② 本條에 말하는 文書에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委任人으로 부터 또는 委任人을 위하여 보관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한다. 다만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와 그 委任人간의 서신의 교환 및 委任人이 이미 原本 또는 謄本으로

61) GebührenVO für Steuerberater, Steuerbevollmächtigte und Steuerberatungsgesellschaften v. 17. 12. 1981 (Nr. 840a).

62) Nr. 802.

보존하고 있는 文書 및 내부목적으로 작성된 업무서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업무서류의 保存義務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은 그 적용에 있어서 이 규정으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第67條 職業責任保險(Berufshaftpflichtversicherung)⁶³⁾

독립한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는 그 직무수행상 생기는 責任危險에 대하여 적당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법 제158c조 제2항이 규정하는 관할관청은 세무사회로 한다.

第68條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Verjährung von Ersatzansprüchen)

위임인과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 사이에 성립하는 계약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위임인의 賠償請求權은 그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消滅時效가 완성된다.

第69條 일반적 代理人의 任命(Bestellung eines allgemeinen Vertreters)

① 관할 세무사회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직업능력이 일시적으로 감퇴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 관계자의 신청으로 다른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를 代理人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代理人은 자기 책임하에, 被代理人의 재산 및 비용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代理人은 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63) § 67 geändert.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③ 代理人의 임기는 일정기간이어야 하고, 최장 2년으로 한다. 任命은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第70條 業務清算人의 任命(Bestellung eines Praxisabwicklers)

①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사회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를 業務清算人으로 임명할 수 있다. 清算人은 원칙적으로 1년의 기간에 한하여 이를 임명한다.

② 清算人은 미결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清算人은 진행중인 업무를 속행하되, 새로운 委任事務를 인수할 수 없다.

③ 清算人은 자기 책임하에, 사망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相續人의 계산과 비용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清算人은 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清算人의 임명은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⑤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免許가 제4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하여 실효되거나 제46조에 의하여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도 清算人을 임명할 수 있다.

第71條 業務受託者의 任命(Bestellung eines Praxistreuhänders)⁶⁴⁾

① 사망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업무를 그 사망 시점에서 아직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는 일정한 者에게 양도한 경우, 관할 세무사회는 相續人의 신청으로 3년까지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를 受託者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64) § 71 Abs. 4 Zitat geänd.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② 受託者は 자기 책임하에, 사망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相續人의 계산과 비용으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 受託者は 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受託者の 임명은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④ 계속적인 업무능력의 흠결로 인하여 免許가 철회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업무에 대하여도 제1항의 요건을 준용하여 受託者를 임명할 수 있다.

第72조 稅務法人(Steuerberatungsgesellschaften)⁶⁵⁾

① 本法 제34조, 제57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6조, 제67조 및 제68조의 각 규정은 세무법인 및 세무사가 아닌 세무법인의 이사회와 구성원, 업무집행사원 및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② 社員과 법률, 정관 또는 원시정관에서 정한 법인의 監査機關의 구성원은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第4章 職業組織(Organisation des Berufs)

第73條 稅務士會(Berufskammer)

① 동일한 상급재무국 관할구역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는 직업회의소를 조직하여야 한다. 그 직업회의소는 “세무사회”라 칭한다.

② 세무사회는 상급재무감사국의 所在地에 그 주소를 둔다. 세무

65) § 72 Abs. 1 Zitat geänd. sowie Abs. 2 neugef.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Abs. 1 Zitat geänd. durch G v. 13. 12. 1990 (BGBl. I S. 2756).

사회는 공법상 法人으로 한다.

第74條 會員資格(Mitgliedschaft)⁶⁶⁾

① 세무사회의 회원은 세무사, 세무대리사 및 상급재무국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세무법인이 된다. 本法의 적용범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않은 세무사와 세무대리사는 그 免許를 받은 지역의 세무사회의 회원이 된다. 이 경우 제56조 제3문의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그 밖에 세무사회의 회원은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아닌 者로서 상급재무국 관할구역 내에 그 주소를 둔 세무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 업무집행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된다.

第75條 合同稅務士會(Gemeinsame Berufskammer)

① 세무사회는 관련 세무사회의 일치된 결의로써 다수의 상급재무국 관할구역 또는 다수 州의 영역에 대하여 단일의 합동세무사회를 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급재무국 관할구역 단위로 조직된 개별 세무사회는 해산한다.

② 다수의 州가 결성한 단일의 합동세무사회에 대하여 관계 州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第76條 稅務士會의 目的事業(Aufgaben der Berufskammer)⁶⁷⁾

① 세무사회는 회원 전체의 직업상 權益을 擁護하고 그 義務履行

66) § 74 Abs. 1 Satz 3 angef. und Abs. 2 geänd.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Abs. 1 Satz 2 geänd. durch G v. 13. 12. 1990 (BGBl. I S. 2756).

67) § 76 Abs. 5 angef.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을 監督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세무사회는 특히 다음의 각호에서 제기하는 사항을 그 업무로 한다.

1. 직업상 義務에 대한 문제(제57조)에 관하여 회원과 相談하고 敎育하는 일
 2. 신청에 의하여 회원간의 紛爭을 調停하는 일
 3. 신청에 의하여 회원과 그 委任인 사이의 紛爭을 조정하는 일
 4. 회원의 義務履行(제57조)을 監督하고 懲戒權(제81조)을 行事하는 일
 5. 직업재판 재판부의 명예직 陪席法官의 추천인명부를 州사법행정청에 제출하는 일(제99조 제3항)
 6. 세무사와 세무대리사 및 그 유가족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을 만드는 일
 7. 법원, 州재무관청 또는 다른 行政廳이 요구하는 감정을 하는 일
 8. 직업교육에서 법률이 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일
 9. 세무사의 직업에 대한 허가위원회 및 시험위원회의 業界代表者를 추천하는 일
- ③ 세무사회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제기한 업무를 이사회 의 각 구성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④ 세무사회는 職業登錄簿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⑤ 세무사회는 後進의 양성을 촉진할 권리를 가진다.

第77條 理事會(Vorstand)

세무사회의 理事會는 회원이 선출하여 이를 구성한다. 세무사회의 자연인인 회원을 理事로 선출한다.

第78條 定款(Satzung)

각 세무사회는 스스로 그 定款을 작성한다. 정관은 감독관청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79條 會費 및 手數料(Beiträge und Gebühren)

① 회원은 會費規程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규정은 감독관청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회비는 회원총회가 이를 정한다.

② 세무사회는 특별사업이나 특별활동의 요청에 대하여 手數料規程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手數料規程은 감독관청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 회비 및 수수료의 납부에 대한 세무사회의 請求權은 時效의 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行政費用法 제20조를 준용한다.

第80條 稅務士會에 出頭할 義務(Pflicht zum Erscheinen vor der Berufskammer)

감독사건 및 抗告事件에 있어서 그 의견의 청취를 위하여 소환된 세무사회의 개인회원은 세무사회에 출두하여야 한다.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 또는 정관이 정한 세무사회의 기관, 위임을 받은 이사회 또는 機關의 구성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로써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81條 理事會의 懲戒權(Rügrecht des Vorstandes)

① 이사회는 회원의 義務違反行爲에 대하여 책임이 輕微하고 직업재판절차의 개시신청이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本法 제89조 제2항 및 제3항, 제92조 및 제109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이사회는 회원에 대하여 직업재판절차가 개시된 경우 또는 義務를 위반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징계할 수 없다.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의 신청에 의하여 法 제116조에 따른 節次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징계를 할 수 없다.

③ 징계를 하기 전에 회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회원의 행위를 징계하는 理事會의 결정은 그 理由를 부기하여야 한다. 결정서는 회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징계결정의 등본은 세무사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의 검찰청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제96조).

⑤ 회원은 이사회의 決定書를 송달받은 후 1개월 이내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異議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

第82條 職業裁判에 의한 決定申請(Antrag auf berufsgerechtliche Entscheidung)

① 세무사회 이사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異議申請이 기각된 경우 그 회원은 棄却決定書를 송달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법원(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재판부)에 그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管轄權은 징계를 한 理事會가 속한 세무사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있다.

② 신청은 지방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그 절차에 관하여는 항고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 반대진술(형사소송법 제380조 제1항)은 세무사회의 理事會가 한다. 검찰청은 그 訴訟節次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세무사회의 회원이 청구하거나, 지방법

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口頭辯論이 인정된다. 口頭辯論의 일시 및 장소는 세무사회의 이사회, 세무사회의 회원 및 그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증거조사의 방법 및 범위는 지방법원에서 정한다. 다만 실체적 진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證據調査는 職權으로 이를 하며, 그 결정에 있어서 異議가 있는 중요한 모든 사실 및 증거 방법을 대상으로 한다.

③ 징계결정이 세무사회의 이사회가 세무사회 회원의 책임이 경미하고 職業裁判의 開始申請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이사회가 징계를 한 후에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재판절차에 의한 처벌을 면제하거나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재판절차를 開始 또는 계속하지 아니할 要件이 충족된 경우에는 지방법원이 그 징계결정을 취소한다. 決定에는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決定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④ 직업재판절차에 의한 決定申請을 접수한 지방법원은 지체없이 상급 지방법원의 검찰청에 申請書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때 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決定書의 등본도 송부한다.

⑤ 검찰청이 세무사회의 이사회가 징계한 것과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직업재판절차에 의한 懲戒決定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세무사회의 회원에 대한 직업재판절차를 개시한 때에는 그 신청에 관한 節次를 직업재판절차가 확정력이 있는 終結에 이를 때까지 정지한다. 제91조 제2항의 규정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은 정지 종료후 징계가 무효임을 확정한다.

第83條 理事의 秘密嚴守義務(Pflicht der Vorstandsmitglieder zur Verschwiegenheit)

①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는 퇴임 후에도 이사회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회원, 응시자 및 그 밖의 者에 대하여 알게 된 사항에 관하여 모든 사람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사회 또는 정관이 정한 機關에 협력하기 위하여 참가한 회원 및 세무사회의 사용인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제기한 者는 이사회 또는 정관이 정한 機關에서 행한 활동과 관련하여 회원, 응시자 및 그 밖의 者에 대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法院 또는 관청의 재판절차에서 송달 또는 보고의무가 있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엄수의무가 해제된 경우에만 이를 진술하거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그 밖의 비밀엄수의무 및 證言拒否權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세무사회 이사회의 認·許可는 法規裁量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認·許可는 세무사회의 地位 또는 업무를 고려하고 또 사실을 알고 있는 者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법 제28조 제2항의 적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⁶⁸⁾

第84條 協議會(Arbeitsgemeinschaft)

① 다수의 세무사회는 그 정관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 權利能力이 없는 협의회를 결성할 수 있다. 다만 감독권 또는 법률상 각 세무사회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그 밖의 업무를 協議會에 이양할 수 없다.

② 제83조에 제기한 者가 협의회 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협의회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밀엄수의무의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3조 제1항의 규정은 협의회를 위하여 활동하는 者에 대

68) Sartorius I Nr. 40.

하여 준용한다.

第85條 聯邦稅務士聯合會(Bundeskammer)

- ① 세무사회는 연방직업회의소를 조직한다. 연방직업회의소는 “聯邦稅務士聯合會”라 칭한다.
- ② 연방세무사연합회는 공법상 法人으로 한다. 연방세무사연합회의 소재지는 定款에서 정한다.
- ③ 연방세무사연합회의 이사회는 세무사회에서 선임한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연방세무사연합회의 정관에서 정한다. 정관은 監督官廳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제83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第86條 聯邦稅務士聯合會의 目的事業(Aufgaben der Bundessteuerberaterkammer)

- ① 연방세무사연합회는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業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연방세무사연합회의 업무는 특히 다음의 각호에 계기한 사항을 포함한다.
 1. 세무사회 전체에 관련되는 문제에 있어서 각 세무사회의 見解를 조사하고, 또한 共同討議의 방법으로 다수의견을 확정하는 일
 2. 세무사 업무수행의 문제에 관한 일반적 견해를 準則으로 확정하는 일
 3. 세무사회의 복지후생시설(제76조 제2항 제6호)을 위한 準則을 정하는 일
 4. 세무사회 전체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연방세무사연합회의 見解를 관할법원 및 관청에 주장하는 일

5. 관청 및 기관에 대하여 세무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일
6. 입법에 관여하고 있는 연방관청, 단체 또는 연방법원이 요청하는 鑑定을 하는 일
7. 세무대리업무에 필요한 職業教育을 촉진시키는 일

第87條 聯邦稅務士聯合會의 會費 (Beiträge zur
Bundessteuerberaterkammer)

연방세무사연합회는 會費規程에 따라 세무사회로 부터 회비를 징수한다. 會費規程은 감독관청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회비는 회원총회에서 정한다.

第88條 國家의 監督 (Staatsaufsicht)⁶⁹⁾

- ① 재무행정을 관할하는 州최고관청은 당해 州내에 소재하는 세무사회를 감독한다.
- ② 연방재무장관은 연방세무사연합회를 감독한다.
- ③ 감독은 법률 및 정관의 준수여부, 특히 세무사회에 부여된 업무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第5章 職業裁判 (Berufsgerichtsbarkeit)

第1節 義務違反에 대한 職業裁判上の 處罰

(Die berufsgerechtliche Ahndung von
Pflichtverletzungen)

69) § 88 Abs. 1 geändert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第89條 義務違反에 대한 處罰(Ahndung einer
Pflichtverletzung)

① 故意 또는 過失로 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직업재판절차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직업 외의 행위가 개개 사건의 사정에 비추어 직무의 수행 또는 직업의 신망을 위하여 필요한 존경과 신뢰를 중대한 방법으로 손상시킨 경우에는 그 행위를 職業裁判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義務違反行爲로 한다.

③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행위가 행위당시의 職業裁判權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업재판절차에 의하여 이를 처벌할 수 없다.

第90條 職業裁判의 處罰種類(Berufsgerichtliche Maßnahmen)

① 직업재판에 의한 처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警告(Warnung)
2. 譴責(Verweis)
3. 20,000 독일 마르크 이하의 過怠料(Geldbuße)
4. 資格剝脫(Ausschließung aus dem Beruf)

② 직업재판에 의한 처벌은 譴責과 過怠料를 병과할 수 있다.

第91條 懲戒 및 職業裁判에 의한 處罰(Rüge und
berufsgerichtliche Maßnahme)

① 세무사회 이사회가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행위에 대하여 이미 징계한 사실(제81조) 여부에 불구하고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

사에 대한 직업재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지방법원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義務違反을 확인하지 못하여 징계결정을 取消한 경우에는(제82조) 그 決定 당시 알지 못하였던 새로운 사실 또는 證據方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다시 직업재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②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 대한 징계는 동일한 行爲에 대한 無罪判決 또는 職業裁判 判決의 확정력으로 그 效力을 상실한다. 징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義務違反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판절차의 개시가 確定力에 의하여 각하된 경우에도 그 效力을 상실한다.

第92條 그 밖의 方法에 의한 處罰(Anderweitige Ahndung)

법원 또는 관청이 형벌, 懲戒處分, 명예재판상의 처벌, 기타 직업재판상의 처벌 또는 秩序罰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義務를 이행하고 職業의 명성을 지키기 위하여 직업재판에 의한 추가적인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행위에 대한 직업재판상의 징계를 중지한다. 資格剝脫은 다른 형벌 또는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93條 義務違反의 公訴時效(Verjährung der Verfolgung einer Pflichtverletzung)

資格剝脫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義務違反에 대한 소추의 시효는 5년으로 한다. 이 경우 형법 제78조 제1항, 제78a조 제1문 및 제78b조 및 제78c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⁷⁰⁾

第94條 稅務士會의 기타 所屬會員에 대한 規定(Vorschriften für Mitglieder der Berufskammer, die nicht Steuerberater oder Steuerbevollmächtigte sind)

① 제5장(職業裁判)의 각 규정은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회에 소속된 者에게 준용한다.

② 제74조 제2항에 규정된 者의 경우에는 資格剝脫 대신에 세무법인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수행할 資格을 박탈한다.

③ 직업재판절차에서 명예직법관이 참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직업재판의 재판부는 세무사사건부와 동일하게 구성한다.

第2節 法院(Die Gerichte)⁷¹⁾

第95條 地方法院의 稅務士 및 稅務代理士 事件部(Kammer für Steuerberater-und Steuerbevollmächtigtensachen beim Landgericht)⁷²⁾

70) Schönfelder Nr. 85.

71) Für den Bereich der neuen Bundesländer siehe §29 Übergangsvorschrift für die Berufsggerichtsbarkeit nach dem StBerG. Beim Kreisgericht anhängige berufsggerichtliche Verfahren gehen in der Lage, in der sie sich befinden, auf das nach den Vorschriften des Steuerberatungsgesetzes zuständige Landgericht über. Beim Bezirksgericht anhängige berufsggerichtliche Verfahren gehen in der lage, in der sie sich befinden, auf das Oberlandesgericht über (BGBl. I S. 1992 I S. 1147/1157).

72) § 95 Abs. 4 Satz 2 geänd.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① 직업재판절차의 제1심은 세무사회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事件部로 한다.

② 하나의 州에 다수의 세무사회가 있는 경우에 州정부는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에 대한 재판의 集中審理 (Zusammenfassung)가 특히 통일적인 판결의 확보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法規命令으로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을 하나 또는 수개의 지방법원에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관련 세무사회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本法에 의하여 어느 州의 지방법원이 관할할 업무를 관련 州와의 합의에 따라 다른 州의 지방법원에 委託할 수 있다.

④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는 公判 외에는 재판장을 포함하여 3명의 지방법원 判事로 구성하여 판결한다. 公判에 있어서는 재판장외에 2명의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陪席으로 참가한다.

第96條 高等法院의 稅務士 및 稅務代理士 事件部 (Senat für Steuerberater-und Steuerbevollmächtigtensachen beim Oberlandesgericht)⁷³⁾

① 직업재판절차의 제2심은 고등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事件部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95조 제2항 및 제3항의 각 규정을 준용한다.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은 州대법원에도 배당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③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는 公判 외에는 재판장을 포함하여 3명의 고등법원 判事로 구성하여 판결한다. 公判에 있어서는 그

73) § 96 Abs. 3 Satz 2 und § 97 Abs. 2 Satz 2 geänd.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외에 陪席인 2명의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참가한다.

第97條 聯邦大法院의 稅務士 및 稅務代理士 事件部(Senat für Steuerberater-und Steuerbevollmächtigtensachen beim Bundesgerichtshof)

① 직업재판절차의 제3심은 연방대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事件部로 한다.

②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는 公判 외에는 재판장을 포함하여 3명의 연방대법원 判事로 구성하여 판결한다. 公判에 있어서 사건부는 재판장을 포함하여 3명의 判事와 陪席인 2명의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로 구성한다.

第98條 (削除)⁷⁴⁾

第99條 陪席 稅務士 및 稅務代理士(Steuerberater oder Steuerbevollmächtigte als Beisitzer)

①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로서 보할 陪席의 직은 명예직법관(ehrenamtliche Richter)으로 한다.

② 명예직법관은 제1심 및 제2심 재판의 경우 州사법행정청이 4년간의 임기로 임명한다. 명예직법관은 그 임기만료 후 재임할 수 있다.

③ 명예직법관은 세무사회의 이사회가 州사법행정청에 제출하는 추천인 名簿 중에서 선임한다. 州사법행정청은 각 법원에 필요한 명예직법관의 정원을 정한다. 이 경우 州사법행정청은 사전에 세무사회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각 추천인 명부에는 적어도 임명

74) § 98 aufgeh.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할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2배수의 인원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명예직법관이 任期만료 전에 퇴임한 때에는 잔여 임기에 한하여 후임자를 임명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각 규정은 연방대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事件部の 명예직법관에 대하여 세무사회를 연방세무사연합회로, 州사법행정청을 연방법무장관으로 하여 이를 준용한다.

第100條 陪席의 任命要件 및 拒否權(Voraussetzungen für die Berufung zum Beisitzer und Recht zur Ablehnung)

①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로서 세무사회의 이사에 선임될 자격(제77조)이 있는 者 중에서 名譽職法官을 임명한다. 명예직법관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및 연방대법원의 각급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에서만 陪席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명예직법관은 동시에 세무사회의 이사회구성원이 되거나 세무사회의 주요 업무 또는 부수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③ 다음 각호에 게기한 者는 陪席職을 거절할 수 있다.

1. 65세를 넘은 者
2. 최근 4년내에 세무사회의 이사이었던 者
3. 질병 또는 불구로 인하여 장애가 있는 者

第101條 陪席의 解任(Enthebung vom Amt des Beisitzers)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제95조 및 제96조의 경우에는 州사법행정청의 청구에 의하여, 제97조의 경우에는 연방법무장관의 청구에 의하여 陪席의 직에서 해임한다.

1. 陪席의 임명요건에 미달하는 사실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

2. 陪席職 임명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사후에 발생한 경우

3. 陪席으로서 직무상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이 규정한 청구에 대하여, 本法 제95조 및 제9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 民事部가, 本法 제9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방대법원 民事部가 이를 결정한다.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의 구성원은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2항이 규정한 決定 전에 당해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第102條 名譽職法官의 地位와 秘密嚴守義務(Stellung der ehrenamtlichen Richter und Pflicht zur Verschwiegenheit)

①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명예직법관으로서 참여하는 법정에서 職業法官(Berufsrichter)의 지위를 가진다.

②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는 名譽職法官으로서 직무상 알게된 사항에 관하여 누구에 대하여도 그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本法 제83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증언에 대한 허가는 法院長이 한다.

第103條 法廷 參與順位(Reihenfolge der Teilnahme an den Sitzungen)⁷⁵⁾

명예직법관은 法院長이 업무년도 개시전에 2명의 최연장 명예직법관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일람표의 순서에 따라 각 法廷에 참여한다.

75) § 103 neugef.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第104條 名譽職法官의 報酬(Entschädigung der ehrenamtlichen Richter)

명예직법관은 명예직법관의 報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第3節 節次規定(Verfahersvorschriften)

1. 總則(Allgemeines)

第105條 節次에 관한 規定(Vorschriften für das Verfahren)
직업재판절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第106條 稅務士 또는 稅務代理士의 不拘束(Keine Verhaftung des Steuerberaters oder Steuerbevollmächtigten)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직업재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逮捕, 拘禁 또는 拘引되지 아니한다.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정신상태에 관한 鑑定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신병원에 수용할 수 없다.

第107條 辯護(Verteidigung)

①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의 직업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38조 제1항에 계기한 者 외에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를 辯護人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각 규정은 직업재판절차의 변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⁷⁶⁾

76) Schönfelder Nr. 90.

第108條 稅務士 또는 稅務代理士의 記錄閱覽(Akteneinsicht des Steuerberaters oder Steuerbevollmächtigten)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法院에 제출된 소송기록 또는 告發狀의 제출과 관련된 사항의 記錄을 열람하고 공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증거물을 검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109條 職業裁判節次와 刑罰節次 또는 過怠料節次와의 關係
(Verhältnis des berufsgerichtlichen Verfahrens zum Straf-oder Bußgeldverfahren)

① 義務違反의 혐의가 있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기소를 한 경우에는 그 者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직업재판절차를 개시하되, 형사소송절차를 종료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한다. 직업재판절차가 이미 개시된 이후에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기소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事實關係가 확보된 경우 또는 형사소송절차를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개인사정으로 속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업재판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犯罪行爲 또는 질서위반을 이유로 한 재판절차에서 형벌규정 또는 과태료규정의 法律要件에 충족하지 아니하여 無罪선고를 하게 된 법원의 판결대상 사실이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義務違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근거로 직업재판절차를 개시하거나 속행할 수 있다.

③ 법원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소송 또는 過怠料訴訟判決의 사실인정은 직업재판절차에 있어서도 구속력이 있다. 다만 직업재판절차에 있어서 법원은 구성원 다수가 의심하는 認定事實에 대하여 再審을 결정할 수 있다. 그 취지는 직업재판의 判決理由에

명기하여야 한다.

第110條 기타의 職業裁判節次와 職業裁判權과의 關係(Verhältnis des berufsgerichtlichen Verfahrens zu den Verfahren anderer Berufsgerichts-barkeiten)

①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의무위반이 동시에 다른 직업상의 懲戒權, 名譽裁判權 또는 직업재판권에 계류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의무위반이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직업의 수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또는 의무위반이 중대하여 資格剝脫을 목적으로 직업재판절차가 개시되는 때에 한하여 직업재판절차에 의하여 판결한다.

② 검찰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 대하여 직업재판절차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취지를 그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者에 대한 절차개시에 관한 관할 검찰청과 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者에 대한 절차를 개시할 관할 검찰청 또는 관청이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 대하여 절차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검찰청 또는 관청은 직업재판절차의 개시에 관한 관할권을 가진 검찰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징계권, 名譽裁判權 또는 직업재판권을 가진 법원이 동시에 다른 직업상 징계권, 명예재판권 또는 직업재판권에 따라야 하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裁判管轄의 유무를 먼저 확정할 경우 그 결정은 다른 법원을 구속한다.

④ 공법상의 고용관계 또는 公職關係로 인하여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제59조)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11條 職業裁判節次の 停止 (Aussetzung des
berufsgerechtlichen Verfahrens)

직업재판절차상 判決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서 判決될 경우에는 직업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2. 第1審 節次 (Das Verfahren im ersten Rechtszug)

第112條 地域 管轄權 (Örtliche Zuständigkeit)

지방법원의 지역 관할권은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절차개시
당시 소속된 세무사회의 所在地에 따라 이를 정한다.

第113條 檢察廳의 協助 (Mitwirkung der Staatsanwaltschaft)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의 소송절차에서 檢察廳의 業務는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가 있는 고등법원 檢察廳이 이를 수행
한다.

第114條 職業裁判節次の 開始 (Einleitung des
berufsgerechtlichen Verfahrens)

직업재판절차는 검찰청이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를
개시한다.

第115條 節次開始에 관한 法院의 決定 (Gerichtliche
Entscheidung über die Einleitung des Verfahrens)

① 검찰청이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 대하여 직업재판절차의
개시를 요구하는 세무사회 이사회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절차
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부기한 決定을 세무사회의 이사

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회 이사회는 검찰청의 決定에 대하여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고등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서에는 직업 재판절차를 개시할 근거가 되는 사실과 證明方法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73조 내지 제1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⁷⁷⁾

④ 형사소송법 제17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16條 稅務士 또는 稅務代理士에 의한 職業裁判節次의 開始申請

(Antrag des Steuerberaters oder Steuerbevollmächtigten auf Einleitung des berufsgerichtlichen Verfahrens)

① 義務違反의 혐의를 받고 있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義務違反의 혐의를 벗기 위하여 자신에 대하여 직업재판절차의 개시를 검찰청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세무사회의 이사회가 징계대상(제81조)이 된 行爲에 대하여는 그 절차의 개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검찰청이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절차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검찰청은 이유를 부기한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義務違反이 이유 중에 적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재판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義務違反이 存在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유보되고 있는 경우에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고등법원에 그 決定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청구는 검찰청의 결정을 통

77) Schönfelder Nr. 90.

지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고등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의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및 제3항의 각 규정을 준용한다. 고등법원은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의무위반의 존부에 대한 確認決定을 한다. 決定에는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고등법원은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게 직업재판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할 의무위반의 혐의가 충분히 있음을 인정한 때에는 직업재판절차의 개시를 결정한다. 그 결정의 실행은 검찰청이 행한다.

④ 고등법원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의무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 또는 證明方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업재판절차의 개시를 요구하거나 세무사회 이사회에 의한 징계를 행할 수 있다.

第117條 訴狀의 內容(Inhalt der Anschuldigungsschrift)

訴狀(제114조, 형사소송법 제207조 제3항)에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의무위반을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을 인용하여 기재하여야 한다(고소문). 또 공판에서 證據調查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證據方法을 기재하여야 한다. 訴狀에는 지방법원의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 사건부의 공판절차의 개시를 요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第118條 公判節次의 開始에 관한 決定(Entscheidung über die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① 공판절차의 開始를 결정함으로써 지방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는 사건을 공판에 붙일 것을 허가한다.

② 공판절차의 開始決定에 대하여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그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③ 공판절차개시의 각하결정에는 그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각하결정에 대하여 검찰청은 즉시 항고할 수 있다.

第119條 却下決定의 確定力 (Rechtskraftwirkung eines ablehnenden Beschlusses)

공판절차의 개시가 취소불가능한 決定으로 각하된 때에는 직업재판절차의 개시는 새로운 사실 또는 證據方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決定에 대한 確定力이 발생한 후 5년 이내에 한하여 재청구를 할 수 있다.

第120條 開始決定의 送達 (Zustellung des Eröffnungsbeschlusses)

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은 召喚狀과 함께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訴狀의 사후 제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0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⁷⁸⁾

第121條 稅務士 또는 稅務代理士의 不出席 公判
(Hauptverhandlung trotz Ausbleibens des Steuerberaters oder Steuerbevollmächtigten)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소환하고, 그 召喚狀에 출석하지 않아도 공판이 진행된다는 뜻이 명시된 경우에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출석 없이도 공판을 개시할 수 있다. 공

78) Schönfelder Nr. 90.

시에 의한 소환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第122條 非公開公判(Nichtöffentliche Hauptverhandlung)⁷⁹⁾

① 공판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찰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고, 세무사나 세무대리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판의 공개에 관한 法院組織法の 규정을 준용한다.

② 비공개공판에는 州법무행정청의 대표자, 고등법원장 또는 그 수임자와 고등법원의 검찰공무원의 入廷을 허락한다. 연방재무장관의 대리인, 재무행정청에 대한 州최고관청의 대표자, 세무사회의 대표자의 入廷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는 방청인으로 入廷할 수 있다. 이 외의 者에 대하여는 지방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가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傍聽人으로서 그 입장을 허락할 수 있다.

第123條 受託法官에 의한 證據調査(Beweisaufnahme durch einen ersuchten Richter)

지방법원의 세무사와 세무대리사 사건부는 區법원에 증인 또는 鑑定人の 심문을 촉탁할 수 있다.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은 그 증인 또는 감정인이 公判에 출석하는데 지장이 예견되거나 원거리로 인하여 출석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청,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公判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79) § 122 Abs. 2 geändert.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第124條 調書の朗讀(Verlesen von Protokollen)

① 지방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는 이미 직업재판절차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서 취득한 증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의 낭독여부를 法規裁量으로 결정한다.

② 법원의 결정에 앞서 檢事,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公判에서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公判에 출석하는데 지장이 예견되거나 원거리로 인하여 출석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요구에 응할 경우에는 이전의 訊問調書の 낭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증인 또는 감정인은 受託法官의 심문을 받는 경우(제123조) 調書の 낭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檢事,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제123조 제2문에 규정한 요구가 각하되고 그 각하이유가 더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낭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第125條 判決(Entscheidung)

① 공판은 심리에 따른 判決의 선고로 종료한다.

② 판결은 無罪선고, 有罪 또는 裁判節次의 中止를 선고한다.

③ 직업재판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 중지된다.

1. 免許가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효되거나 제46조에 따라 취소 또는 철회된 때

2.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職業裁判에 의한 처벌이 면제된 경우

3. 上訴(Rechtsmittel)

第126條 抗告(Beschwerde)

抗告事件에 대한 심리와 결정은 고등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事件部가 이를 관장한다.

第127條 抗訴(Berufung)

① 지방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의 判決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에 항소할 수 있다.

② 抗訴는 지방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의 사건부 判決이 선고된 후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판결이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출석없이 선고된 경우에는 判決文이 송달된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한다.

③ 抗訴는 서면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④ 기타의 節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 외에 本法 제121조 내지 제125조의 각 규정을 준용한다.

第128條 第2審에서의 檢察廳의 協助(Mitwirkung der Staatsanwaltschaft im zweiten Rechtszug)

제2심에서의 檢察廳의 업무는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가 있는 고등법원 檢察廳이 수행한다.

第129條 上告(Revision)

① 고등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의 判決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방大法院에 상고할 수 있다.

1. 資格剝脫이 선고된 경우

2. 고등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가 검찰청의 구형에 반하여 資格剝脫을 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고등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가 판결에서 上告를 허락한 경우

② 고등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는 원칙적이고 중요한 法律問題(Rechtsfragen) 또는 직업상의 義務問題(Fragen der Berufspflichten)에 대하여 판결한 경우에 한하여 上告를 허가한다.

③ 상고의 불허에 대하여 判決文의 송달 후 1개월 이내에 독립된 항고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항고는 고등법원에 하여야 한다. 抗告狀에는 원칙적인 법률문제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④ 항고로써 判決의 確定力은 중단된다.

⑤ 항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연방대법원이 決定으로 판결한다. 항고가 만장일치로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그 決定에는 이유를 부기할 필요가 없다. 판결은 연방대법원의 항고의 각하결정으로 確定力이 생긴다. 항고를 인정한 경우에는 抗告決定文의 송달일로 부터 상고기간이 개시된다.

第130條 上告의提起와 節次(Einlegung der Revision und Verfahren)

① 상고는 일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등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판결의 선고시로 부터 개시된다.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출석없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그 기간은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②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상고신청과 上告理由書를 제출할 수 없다.

③ 연방대법원의 訴訟節次에 대하여는 상고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각 규정 외에 本法 제122조 내지 제125조 제3항의 각 규정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354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건을 다른 州의

고등법원에 환송할 수 있다.⁸⁰⁾

第131條 聯邦大法院에 대한 檢察廳의 協助(Mitwirkung der Staatsanwaltschaft vor dem Bundesgerichtshof)
연방대법원의 訴訟節次에 있어서 검찰청의 업무는 연방검찰총장이 수행한다.

4. 證據의 保全(Die Sicherung von Beweisen)

第132條 證據保全命令(Anordnung der Beweissicherung)

①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免許가 실효, 취소 또는 철회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 대한 직업재판절차가 중지된 경우로서 그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資格剝脫이 예견될 때에는 검찰청의 요구에 의하여 中止決定과 동시에 증거보전을 명할 수 있다. 證據保全命令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② 지방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가 證據를 채택한다.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는 직업재판부의 法官 중 1인에게 證據調査를 위탁할 수 있다.

第133條 節次(Verfahren)

① 지방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는 職權으로 중지된 절차가 資格剝脫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모든 證據를 조사하여야 한다.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는 청구인의 요구에 구속됨이 없이 法規裁量에 따라 절차의 범위를 정

80) Schönfelder Nr. 90.

한다. 그 處分은 취소할 수 없다.

② 증인은 예외규정이 있거나 허가가 없는 한 宣誓를 하고 심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 검찰청과 전직의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이 節次에 관여할 수 있다. 전직의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국내에 체재하고 지방법원에 그 주소 및 성명을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證據保全을 위한 기일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職務遂行 및 代理의 禁止

(Das Berufs-und Vertretungsverbot)

第134條 禁止의 要件(Voraussetzung des Verbots)

①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資格剝脫의 판결을 받을 유력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者에 대하여 직무수행 또는 대리의 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검찰청은 직업재판절차의 개시 전에 직무수행 또는 대리의 금지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서에는 세무사나 세무대리사에게 책임이 있는 義務違反과 그 證明方法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심리와 판결에 대하여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 대한 공판의 개시에 관한 결정권이 있는 법원 또는 직업재판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第135條 口頭辯論(Mündliche Verhandlung)

① 직무수행 또는 대리의 금지를 과하는 決定은 口頭辯論을 거쳐 선고한다.

② 법원의 구성, 소환 및 口頭辯論에 관하여는 다음 항 이하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판결을 하는 법원의 공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召喚狀에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게 책임이 있는 義務違反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인용 적시하고, 그 證明方法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게 소환을 이미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證據調査의 범위는 검찰청,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요구에 구속됨이 없이 법원이 법규재량으로 정한다.

第136條 禁止에 대한 票決(Abstimmung über das Verbot)

직무수행 또는 대리의 禁止에 대한 決定은 투표권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第137條 公判에 附帶한 禁止宣告(Verbot im Anschluß an die Hauptverhandlung)

법원이 資格剝脫을 선고할 경우 공판절차에 직접 부대하여 직무수행 또는 대리의 금지를 명할 것인가에 관하여 심리하고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公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138條 決定書의 送達(Zustellung des Beschlusses)

決定書에는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決定書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第139條 禁止의 效力(Wirkungen des Verbots)⁸¹⁾

81) § 139 Abs. 4 geändert durch G v. 14. 12. 1976 (BGBl. I S. 3341).

- ① 禁止決定은 선고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직무수행의 금지가 선고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다.
- ③ 대리의 금지가 선고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법원이나 관청에 스스로 출두할 수 없고, 대리권 또는 復代理權을 수여할 수도 없으며, 또한 법원, 관청,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 혹은 다른 조세사건의 代理人과 서면으로 교섭할 수 없다.
- ④ 직업수행의 禁止 또는 대리의 禁止가 선고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자기의 사무와 조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자기 가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⁸²⁾
- ⑤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행한 法律行爲의 효력은 직무수행의 금지 또는 대리의 금지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그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 대한 法律行爲의 효력도 또한 같다.

第140條 禁止에 대한 違反行爲(Zuwiderhandlungen gegen das Verbot)

- ① 직무수행 또는 대리의 금지를 고의로 위반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업재판절차에 의한 감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그 資格을 박탈한다.
- ② 법원 또는 관청은 직무수행 또는 대리의 금지를 위반하여 출두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를 기피하여야 한다.

第141條 抗告(Beschwerde)

- ①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직무수행 또는 대리의 금지

82) Nr. 800.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항고는 決定의 效力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②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선고한 職務遂行 또는 대리의 금지결정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검찰은 즉시 항고할 수 있다.

③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即時抗告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이,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即時抗告에 대하여는 연방대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그 절차에 관하여는 항고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 외에 本法 제13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136조 및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142條 禁止의 失効(Außerkrafttreten des Verbots)

직무수행 또는 대리의 금지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실효한다.

1. 資格剝脫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때
2.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의 公判節次의 개시가 却下된 때

第143條 禁止의 取消(Aufhebung des Verbots)

① 직무수행 또는 대리의 금지에 처할 요건이 흠결되거나 더이상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禁止를 취소한다.

② 取消은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③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직무수행 또는 대리의 금지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때에는 새로운 口頭辯論을 명할 수 있다. 제1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의자의 즉시항고가 미결 중인 경우에는 취소청구를 할 수 없다. 취소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第144條 禁止의 通知(Mitteilung des Verbots)

- ① 직무수행 또는 대리의 禁止決定은 지체없이 면허관청과 세무사회 회장에게 인증등본으로써 송달하여야 한다.
- ② 직무수행 또는 대리의 금지가 실효되거나 취소 또는 변경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145條 代理人의 任命(Bestellung eines Vertreters)

- ① 직무수행 또는 대리의 금지를 선고받은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세무사회는 代理人을 임명한다. 당해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대리인의 임명 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적당한 代理人을 추천할 수 있다.
- ② 代理人은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 ③ 代理人으로 선임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대리를 거부할 수 있다.
- ④ 대리인은 자기의 책임하에 被代理人의 계산과 비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대리인은 被代理人의 지시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 ⑤ 被代理人은 대리인에게 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세무사회의 이사회는 被代理人 또는 대리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보수를 결정한다. 대리인은 약정된 보수 또는 결정된 보수의 선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결정된 보수에 대하여는 세무사회가 保證人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第4節 節次費用, 處罰 및 費用의 執行과 抹消(Die Kosten in dem berufsgerichtlichen Verfahren und in dem Verfahren bei Anträgen auf berufsgerichtliche Entscheidung über die Rüge. Die Vollstreckung der berufsgerichtlichen Maßnahmen und der Kosten Die Tilgung)

第146條 手數料의 免除와 支出費用 (Gebührenfreiheit, Auslagen)

직업재판절차 및 징계에 관한 직업재판의 결정신청절차(제82조)에 대하여는 手數料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대신 法院費用法의 규정에 의한 替當金만을 징수한다.

第147條 職業裁判節次의 開始申請 費用 (Kosten bei Anträgen auf Einleitung des berufsgerichtlichen Verfahrens)

① 검찰청의 판단(제116조 제2항)에 대한 법원의 決定을 요구하는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그 청구절차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15조 제2항의 경우 법원에 대한 세무사회 이사회의 청구가 기각된 때에는 세무사회가 그 청구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148條 有罪宣告를 받은 者의 費用負擔義務 (Kostenpflicht des Verurteilten)

① 직업재판절차에서 有罪宣告를 받은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동시에 그 절차에서 발생한 費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직업재판절차가 면허의 실효 또는 取消로 인하여 중지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진행의 결과 직업재판상의 처벌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證據保全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절차(제132조 및 제133조)에서 발생한 비용은 직업재판절차비용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직업재판절차에서 上訴를 취하하거나 또는 上訴가 인용되지 않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동시에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上訴가 일부만 인용된 경우에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그 비용 중 상당부분에 대하여만 부담한다.

③ 確定判決로 종료된 절차에 대하여 再審의 신청을 하는 경우의 비용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149條 懲戒에 대한 費用負擔義務(Kostenpflicht in dem Verfahren bei Anträgen auf berufsgerichtliche Entscheidung über die Rüge)

① 징계에 관한 職業裁判의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된 경우에는 제148조 제1항 제1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법원이 職業裁判에 따른 처벌로 인하여 징계가 무효임(제82조 제5항 제2문)을 확인하거나, 지방법원이 제82조 제3항 제2문의 규정에 따라 징계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지방법원은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게 그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職業裁判請求를 취하하거나 그 청구가 허가되지 아니하여 기각된 때에는 제148조 제2항 제1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82조 제3항 제2문의 경우를 제외하고 징계결정이 취소되거나, 직업재판절차에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無罪宣告를 받거나

또는 제91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징계의 無效가 확인된 경우에(제 82조 제5항 제2문)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 대하여 필요한 替當金은 세무사회의 부담으로 한다.

第150條 稅務士會의 責任(Haftung der Berufskammer)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과할 수 없는 費用 또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費用은 그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소속된 세무사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第151條 職業裁判上の 處罰 및 費用의 強制執行(Vollstreckung der berufsgerichtlichen Maßnahmen und der Kosten)

① 資格剝脫(제90조 제1항 제4호)은 판결의 確定力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유죄선고를 받은 자는 確定力이 증명되는 判決文의 인증등본을 근거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 登錄簿에서 말소한다.

② 警告 및 譴責(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은 確定力 있는 판결로써 이를 집행한 것으로 본다.

③ 過怠料의 집행 및 비용의 징수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 대한 절차가 確定力이 있는 결심으로 종료된 후에 행하여진 資格剝脫 사실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過怠料와 병행하여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그 비용에 대하여도 過怠料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第152條 前科抹消(Tilgung)

①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 기록부상의 기재는 警告에 관하여는 5년 후, 譴責 또는 過怠料에 관하여는 10년 후에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직업재판절차에 의한 그 처벌전과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 관하여 작성한 기록부에서 삭제·파기하여야 한다. 기간이 경과된 후의 처벌전과는 그 후의 職業裁判上の 처벌시에 참작하지 아니한다.

② 기간은 職業裁判上の 처벌에 대한 취소가 불가능하게 된 날부터 개시한다.

③ 기간은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 대한 형사소송절차, 명예재판절차, 직업재판절차 또는 懲戒節次가 계속중이거나 다른 직업재판절차에 의한 처벌이 고려될 수 있는 경우 또는 過怠料가 선고된 판결이 아직 집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료되지 아니한다.

④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職業裁判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각 규정은 세무사회 이사회의 징계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第5節 職業裁判에 대한 適用規定; 統一條約 第3條에 規定한
地域内の 職業裁判權(Für die Berufsgerichtsbarkeit
anzuwendende Vorschriften; Berufsgerichtsbarkeit in dem
in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Gebiet)

第153條 職業裁判權에 대하여 적용할 規定(Für die
Berufsgerichtsbarkeit anzuwendende Vorschriften)⁸³⁾

83) Unterabschnittsüberschrift neugef., § 153 Abs. 2 angef. durch Vertrag v. 31. 8. 1990(BGBl. II S. 889, 970).

Abs. 2 ist-mWv 1. 7. 1992 nicht mehr anzuwenden (§18

① 職業裁判權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및 법원비용법을 보충적으로 준용한다.

② 統一條約 제3조가 규정한 지역에서는 職業裁判權에 관한 규정은 지방법원 대신에 區法院을, 고등법원 대신에 지방법원으로 각각 변경하여 적용한다. 區法院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는 공판외에는 재판장이 판결한다.⁸⁴⁾

第6節 經過規定과 職業의 統合(Übergangsvorschriften, Zusammenführung der Berufe)

第154條 法律施行 前에 許可를 받은 稅務士 및 稅務代理人(Vor dem Inkrafttreten des Gesetzes zugelassene Steuerberater und Helfer in Steuersachen)

① 본법의 시행 전에 본법의 적용영역 내에서 세무사 또는 稅務代理人으로 공식적으로 免許를 취득하였거나 최종적인 허가를 받은 자는 再免許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本法에 의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자격이 있다.

② 제1항에 계기한 자는 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구역에 대하여 작성된 職業登錄簿에 등록을 신청하

Rechtspflege-Anpassungsgesetz v. 28. 6. 1992 BGBl. I S. 1147). Siehe nunmehr §29 Rechtspflege-Anpassungsgesetz: " §29 Übergangsvorschrift für die Berufsgerichtsbarkeit nach dem StBerG. Beim Kreisgericht anhängige berufsgerichtliche Verfahren gehen in der lage, in der sie sich befinden, auf das nach den Vorschriften des Steuerberatungsgesetzes zuständige Landgericht über. Beim Bezirksgericht anhängige berufsgerichtliche Verfahren gehen in der Lage, in der sie sich befinden, auf das Oberlandesgericht über."

84) Nr. Vor 1.

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자는 제1항의 요건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등록 전의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본법 제41조 제2항이 규정한 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제2항의 기간 내에 登録申請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제2항 제2문이 정한 立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41조 제2항이 정한 保證書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로서의 자격은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이 부당하게 가혹한 경우에는 免許官廳은 신청기간 및 입증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1961년 11월 1일에 공법상의 근무관계 또는 직무관계(제59조)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유의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같다.

第155條 既存 法人(Bestehende Gesellschaften)⁸⁵⁾

① 본법 시행당시 본법의 적용범위 내에서 허가 또는 認可를 받고 제50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稅務法人은 계속하여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본법 시행당시 본법의 적용범위 내에서 허가 또는 認可를 받았으나 제50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稅務法人은 본법의 시행 연도가 경과할 때까지 계속하여 업무를 할 수 있다. 당해 稅務法人이 동시에 會計法人 또는 선사회계법인인 경우에는 적어도 이사회의 구성원, 업무집행사원 또는 인적무한책임사원의 과반수가 세무사인 때로부터 계속하여 업무를 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재무행정을 관할하는 州최고관청이 위 요건의 免除를 승인

85) § 155 Abs. 2 Satz 3 und Abs. 3 Satz 4 geänd., Abs. 4 neu gef. durch G v. 9. 6. 1989(BGBl. I S. 1062), Abs. 4 Satz 2 eingef. durch G v. 13. 12. 1990 (BGBl. I S. 2756).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법인은 본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職業登錄簿에 등록을 신청하고, 동시에 제1항 또는 제2항 제1문의 요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稅務法人으로서의 허가 또는 認可가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稅務法人은 계속하여 업무를 할 수 없다.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法人이 제50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위 기간 내에 입증하지 아니한 때에 그 法人은 제2항 제1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처리한다. 위의 기간이 부당하게 가혹한 경우에는 재무행정을 관할하는 州최고관청이 신청기간 또는 입증기간의 연장을 인정할 수 있다.

④ 1989년 6월 16일 認可를 받은 稅務法人은 認可된 것으로 본다. 본법 제4조 제3호, 제7호 및 제8호에 의하여 설립된 機關의 위임사무를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후에 그러한 機關의 위임사무를 인수한 법인도 또한 같다. 재무행정을 관할하는 州최고관청이 상업등기부에 등기를 할 때까지 認可를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이미 확인한 稅務法人도 認可된 것으로 본다. 1990년 12월 31일 이후에 社員의 존재 또는 그 참가비율 또는 투표권이 法律行爲 또는 相續의 개시에 따라 변경되고, 지분 또는 투표권이 제50a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항 제2문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社員에게 양도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무행정을 관할하는 州최고관청은 제5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법상 團體의 지분이 업무의 양도와 관련하여 다른 공법상의 團體에 이전될 경우에는 당해 최고관청은 認可의 철회를 중지할 수 있다.

第156條 稅務代理士の 免許(Bestellung als
Steuerbevollmächtigter)⁸⁶⁾

① 세무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당해 시험을 면제받은 者만이 세무대리사의 免許를 받을 수 있다. 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②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응시자에 대하여 세무대리사 시험의 수험을 허가한다.

1. 中學校 졸업자격증명서를 소지한 者, 또는 국가가 인정한 商業學校 또는 이와 동등한 資格이 있는 기관에서 2년간 수학한 후 졸업 시험에 합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에 상당하는 지식을 습득한 者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상업에 관련된 직업에서 정규 수업과정을 補助者試驗의 합격과 함께 수료하였거나,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行政專門學校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기관에서 4학기를 수료한 者

3. 제2호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 후 4년간 조세관련 영역에서 주된 직업으로 종사한 者.

③ 시험의 허가 및 수수료에 대한 규정(제39조)은 이를 준용한다. 세무대리사시험의 수수료는 350 독일 마르크로 한다.

④ 제37조, 제40조 및 제41조의 각 규정은 세무대리사 免許에 준용한다. 免許(제40조) 및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받는 관할관청은 상급 재무감사국으로 한다.

⑤ 세무대리사시험의 시험허가신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효력발생 후 8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1979년 1월 1일 이후에 지원하는 者는 세무대리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였거나 응시자의 책임 없는

86) § 156 Abs. 5 neu gef. durch G v. 18. 8. 1980 (BGBl. I S. 1537).

사유로 시험에 응할 수 없었을 때에는 제1문이 정한 기간은 3년간 연장된다. 제2항 제3호의 예비교육요건의 충족이 병역, 보충역 또는 개발도상국의 원조봉사로 인하여 중단된 때에는 제1문의 기간은 병역, 보충역의 복무 또는 개발도상국 원조봉사 기간까지 연장한다. 이 경우 제2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157條 稅務代理士の 稅務士 免許(Bestellung von

Steuerbevollmächtigten zu Steuerberatern)⁸⁷⁾

① 세무대리사가 다음의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의 免許를 부여한다.

1. 세무대리사 業務를 주된 직업으로 6년간 수행하고,
2. 제1호의 요건을 충족시킨 후 관할 세무사회에서 실시한 세미나를 수료한 경우.

대학에서 經濟學 또는 法學을 전공한 者 또는 고등교육기관의 타 학부에서 經濟學을 전공 수료한 세무대리사에 대하여는 제1문 제1호의 기간은 3년으로 단축한다.

② 세미나는 50시간으로 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物的 法人에 대한 대차대조표 작성규정
2. 物的 法人에 대한 과세
3. 租稅法院法

1회의 세미나에 참가하는 세무대리사의 정원은 25명으로 한다.

③ 세미나는 本法 제79조 제2항이 규정한 세무사회의 特別事業으

87) § 157 Abs. 8 neu gef. durch G v. 18. 8. 1980 (BGBl. I S. 1537), Abs. 2 Satz 1 Nr. 1, Abs. 6 Satz 1 und Abs. 8 Satz 1 neu gef.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Abs. 9 angef. durch Vertrag v. 31. 8. 1990 (BGBl. II S. 889, 970).

로 한다.

④ 세미나를 수료한 者는 세미나위원회가 행하는 口述試驗에 응하여야 한다. 이 시험은 최저 3명, 최고 6명까지의 응시자로 제한한다. 試驗時間은 3명의 응시자일 때는 60분, 6명의 응시자일 때는 120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口述試驗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세미나위원회의 委員은 다음과 같다.

1. 재무행정청이 지명한 2인의 公務員 또는 퇴직공무원, 그 중 상급직의 公務員을 委員長으로 한다.

2. 세무사 1인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免許를 받은 세무사 1인

상급재무국 관할구역마다 최저 하나 이상의 세미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문 제1호에 계기한 세미나위원회의 위원은 과거 세미나에서 교수한 경험이 있는 者로 한다.

⑥ 口述試驗에 응하는 응시자는 재무행정을 관할하는 州최고관청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300 독일 마르크의 수수료를 당해 州최고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9조 제2항 제2문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연방재무장관은 연방세무사연합회의 의견을 들은 후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사항에 대한 法規命令을 제정할 수 있다.

1. 세미나科目의 세목

2. 세미나 및 口述試驗의 실행절차

3. 세미나위원회 委員의 임명절차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免許는 1989년 12월 31일이 경과할 때까지만 가능하다. 제156조 제5항 제2문의 경우 제1문이 정한 기간은 3년간 연장된다. 제156조 제5항 제3문을 이에 준용한다.

⑨ 統一條約 제3조에 열거한 지역에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免許를 받은 세무대리사에 대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免許의 발급기한은 1997년 12월 31로 한다.⁸⁸⁾

第157 a 條 稅務士法の 第4次 改正에 의한 經過規定

(Übergangsvorschriften aus Anlaß des
Vierten Gesetzes zur Änderung des
Steuerberatungsgesetzes)⁸⁹⁾

① 1989年 6月 15日부터 시행된 法律 제4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로서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있는 法人 및 社團은, 당해 대리가 法定代理人 또는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자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동시에 농업경영자에게 통상 생기는 부수입이 문제가 될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가 독립적인 노동 또는 영업상의 수입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그 자격을 갖는다. 업무로서 세무대리를 행할 자격은 그 세무대리가 1989년 6월 16일 이후에는 “농업장부관리소”의 명칭을 사용할 자격을 갖는 者에 의하여 행하여 지지 아니할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재무행정을 관할하는 州최고관청은 개개의 경우 사정에 따라 적절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社團 중 1989년 6월 16일 현재 “농업장부관리소”의 명칭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 社團은 적어도 1인의 업무집행자가 당해 명칭을 직업명칭에 부가하여 사용할 자격이 있는 경우에 그 명칭을 社團의 명칭에 계속 부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88) Nr. Vor 1.

89) § 157a eingef.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Abs. 3
Zitat geändert durch G v. 13. 12. 1990 (BGBl. I S. 2756).

③ 제36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예비교육요건은 1989년 6월 16일 이전에 행한 활동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7節 委任命令 (Verordnungsermächtigung)

第158條 稅務士, 稅務代理士 및 稅務法人에 관한 施行令 委任
(Durchführungsbestimmungen zu den Vorschriften über Steuerberater, Steuerbevollmächtigte und Steuerberatungsgesellschaften⁹⁰⁾ 91)

연방정부는 연방세무사연합회의 의견을 들은 후 연방上院의 동의를 얻어 法規命令으로 다음의 사항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 a) 시험허가 및 시험허가면제절차, 특히 제36조, 제37조, 제37d조 및 제38조가 요구하는 신고서와 증명서의 장구를 위한 서식의 제정

b) 시험의 실시, 특히 시험범위,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에 관한 사항

c) 재시험 절차.

d) 허가위원회 및 시험위원회의 구성

e) 시험허가의 취소 및 철회

2. 免許에 관한 사항

90) VO zur Durchf. der Vorschriften über Steuerberater, Steuerbevollmächtigte und Steuerberatungsgesellschaften v. 12. 11. 1979 (Nr. 845).

91) § 158 geänd.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Nr. 1 Buchst. a neu gef. durch G v. 13. 12. 1990 (BGBl. I S. 2756).

3. 稅務法人의 인가절차에 관한 사항
4.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구술시험에 관한 사항, 특히 試驗範圍, 시험의 면제 및 “농업장부관리소” 명칭의 부여 절차
5. 직업등록부의 작성과 관리 및 등록의무
6. 責任保險의 체결과 유지 및 최저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

第3篇 强制手段과 秩序違反(Zwangsmittel, Ordnungswidrigkeiten)

第1章 作爲 및 不作爲를 理由로 한 執行 (Vollstreckung wegen Handlungen und Unterlassungen)

第159條 强制手段(Zwangsmittel)⁹²⁾

强制手段의 적용은 조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

第2章 秩序違反(Ordnungswidrigkeiten)

第160條 無資格稅務代理(Unbefugte Hilfeleistung in Steuersachen)⁹³⁾

① 다음 각호에 제기한 자는 秩序違反을 한 것으로 한다.

1. 제5조 제1항 또는 제7조가 규정한 실행가능한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로서 세무대리를 행하는 者

92) § 159 neugef.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93) § 160 Abs. 1 Nr. 1 geänd.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세무대리를 하기 위하여 자기의 직무 또는 제3자의 직무를 제공하는者.

② 秩序違反은 최고 10,000 독일 마르크까지의 過怠料에 처한다.

第161條 “稅務法人”, “勤勞所得稅納稅組合”, “農業帳簿管理所”
등의 名稱保護(Schutz der Bezeichnungen
“Steuerberatungsgesellschaft”, “Lohnsteuerhilfverein”
und “Landwirtschaftliche Buchstelle”)

① 자격 없이 “稅務法人”, “勤勞所得稅納稅組合”, “農業帳簿管理所”의 명칭 또는 이들 명칭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者는 秩序違反을 한 것으로 한다.

② 秩序違反은 최고 10,000 독일 마르크의 過怠料에 처한다.

第162條 勤勞所得稅納稅組合의 義務違反(Verletzung der den
Lohnsteuerhilfvereinen obliegenden Pflichten)⁹⁴⁾

① 다음 각호에 제기한 組合은 秩序違反을 한 것으로 한다.

1.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관의 변경을 관할 상급재무감사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년차 業務監査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법정기한 내에 이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 제7항 제1호에 위반하여 업무감사보고서 등본을 관할 상급재무감사국에 송부하지 아니하거나 법정기한 내에 송부하지 아

94) § 162 geändert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und v. 13. 12. 1990 (BGBl. I S. 2756).

니한 경우

4. 제22조 제7항 제2호에 위반하여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회원에게 監査結果의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법정기한 내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3조 제3항 제1문에 위반하여 같은 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者를 사무소 소장으로 임명한 경우

6. 제23조 제4항에 위반하여 관할 상급 재무감사국에 사무소의 개설 또는 폐쇄, 사무소 소장의 임명 또는 해임, 組合에 소속된 근로소득세 세무대리업무 종사자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監督官廳에 회원총회 또는 대의원총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법정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정한 秩序違反에 대하여는 최고 10,000 독일 마르크의 過怠料에 처하고 제1항 제1호, 제6호 및 제7호에 정한 秩序違反에 대하여는 최고 2,000 독일 마르크의 過怠料에 처한다.

第163條 組合所屬의 勤勞所得稅 稅務代理業務 從事者의 義務違反

(Pflichtverletzung von Personen, deren sich der Verein bei der Hilfeleistung in Lohnsteuersachen bedient)⁹⁵⁾

①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소득세의 세무대리와 관련된 다른 경제적 활동을 한 者는 秩序違反을 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秩序違反에 대하여는 최고 50,000 독일 마르크의 過怠料에 처한다.

95) § 163 Abs. 2 geändert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第164條 節次(Verfahren)⁹⁶⁾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행정관청은 세무서로 한다. 조세기본법 제387조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그 밖의 過怠料處分節次에 관하여는 조세기본법 제4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내지 제11호와 제2항 및 제412조를 준용한다.⁹⁷⁾

第4篇 最終規定(Schlußvorschriften)

第164 a 條 行政節次(Verwaltungsverfahren)⁹⁸⁾

① 본법 제1편, 제2편 제2장 및 제6장, 제3편 제1장이 규정한 공법상 또는 직업법상의 사무에 있어서 行政節次の 실행은 조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이를 행한다.

②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認可의 취소 또는 철회(제20조), 사무소의 폐쇄명령(제28조 제3항),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免許(제46조) 또는 稅務法人의 認可(제55조)의 경우에는 조세기본법 제361조 제4항 및 조세법원법 제69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⁹⁹⁾ 세무대리의 실행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수 있다. 금지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第165條 委任(Ermächtigung)

96) § 164 neugef. durch G v. 14. 12. 1976 (BGBl. I S. 3341), Satz 1 zweiter Halbsatz angef. durch G v. 18. 8. 1980 (BGBl. I S. 1537).

97) Nr. 800.

98) § 164a eingef. durch G v. 14. 12. 1976 (BGBl. I S. 3341), Abs. 2 angef. durch G v. 9. 6. 1989 (BGBl. I S. 1062); Abs. 2 Satz 1 geänd. durch G v. 21. 12. 1992 (BGBl. I S. 2109).

99) Nr. 802.

本法과 그 시행령의 文言에 대하여 각 적용 시점에서 法律의 文言을 새로이 다듬고 그 낱자를 부기하며 條文의 순서를 새롭게 하여 공포하고, 동시에 文言의 불일치를 조정하는 일을 연방재무장관에게 위임한다.

第166條 法規의 廢止(Aufhebung gesetzlicher Vorschriften)

① 本法의 시행으로 다음 각호에 제기한 法律은 폐지한다.

1. 1937년 2월 18일자의 독일제국 조세기본법 제107조의 시행령 (제국法律公報 제1편 245면),

1936년 1월 11일자의 독일제국 조세기본법 제107a조의 시행령 (제국法律公報 제1편 11면),

1943년 6월 12일자의 독일제국 稅務士聯合會에 관한 명령(1943년 7월 1일자의 독일제국 法律公報 제150호, 독일제국 法律公報 제1편 374면),

1943년 7월 8일자의 독일제국 稅務士聯合會에 관한 제2차 명령 (1943년 7월 10일자의 독일제국 法律公報 제158호, 독일제국 法律公報 제1편 385면).

2. 稅務士職業法에 관한 다음의 法令

a) 1948년 3월 9일자의 공인회계사, 회계사 및 세무사에 관한 바이에른 法律 제105호(바이에른 法律·명령집 45면),

1948년 12월 15일자의 공인회계사, 회계사 및 세무사에 관한 法律 제105호의 시행령(1949 바이에른 法律·명령집 4면),

1949년 6월 15일자의 공인회계사, 회계사 및 세무사에 관한 法律 제105호의 제2차 시행령(바이에른 法律·명령집 272면),

1948년 8월 16일자의 공인회계사, 회계사 및 세무사에 관한 법규 명령(1948년 8월 17일자의 전 바이에른地方 린다우 관보 제62호).

b) 1947년 12월 17일자의 공인회계사, 회계사 및 세무사에 관한 뷔르템베르크-바덴 法律 제911호(1948년 뷔르템베르크-바덴 정부관보 9면),

1948년 11월 8일자의 공인회계사, 회계사 및 세무사에 관한 法律의 제1차 시행령, 법규명령 제937호(뷔르템베르크-바덴 정부관보 7면) 및 1948년 11월 8일자의 공인회계사, 회계사 및 세무사에 관한 法律의 제2차 시행령, 법규명령 제938호(1949년 뷔르템베르크-바덴 정부관보 16면).

c) 1947년 12월 13일자의 공인회계사, 회계사 및 세무사에 관한 헤센州 法律(1948년 헤센州 法律·명령집 8면),

1950년 5월 3일자의 공인회계사, 회계사 및 세무사에 관한 法律의 제1차 시행령(헤센州 法律·명령집 73면),

1950년 5월 3일자의 공인회계사, 회계사 및 세무사에 관한 法律의 제2차 시행령(헤센州 法律·명령집 84면).

d) 1948년 2월 26일자의 공인회계사, 회계사 및 세무사에 대한 브레멘 法律(자유 한자동맹도시 브레멘 法律公報 29면),

1948년 12월 4일자의 공인회계사, 회계사 및 세무사에 관한 法律의 제1차 시행령(자유 한자동맹도시 브레멘 法律公報 238면),

1948년 12월 4일자의 공인회계사, 회계사 및 세무사에 관한 法律의 제2차 시행령(자유 한자동맹도시 브레멘 法律公報 246면).

e) 1953년 3월 31일자의 세무사허가에 대한 라인란트-팔츠 準則(라인란트-팔츠 州정부 내각 官報 219면).

3. 1957년 9월 16일자의 세무대리사의 허가에 관한 바이에른 準則(재무부 公報 990면).

4. 뷔르템베르크-바덴 법규명령 제536호, 1949년 3월 16일자의 독일제국 조세기본법(AO) 제107a조의 시행령(뷔르템베르크-바덴

정부官報 201면).

5. 조세감정인(세무사와 세무대리사)의 職業法에 관한 다음의 명령

a) 1946년 1월 15일자의 바덴 지역(프랑스 지역)에서 경제 및 조세감정인 회의소의 설립에 관한 명령(바덴 軍事정부 官報 6면).

b) 1946년 3월 8일자의 뷔르템베르크-호헨줄레른 州의 경제 및 조세감정인 회의소의 설립에 관한 법규명령(프랑스占領地區 뷔르템베르크-호헨줄레른에 대한 군정사령부 官報 19면).

c) 1946년 9월 20일자의 라인란트-헤센-나싸우 州의 경제 및 조세감정인 회의소의 설립에 관한 라인란트-헤센-나싸우 州長官의 訓令(官報 193면).

6. 1947년 9월 24일의 독일제국 稅務士會에 관한 영국지역에 대한 재무행정관리국의 명령(영국지역에 대한 재무행정관리국의 조세 및 관세 公報 407면),

1948년 3월 31일자의 세무사 및 개정의 주회의소에 관한 영국지역에 대한 재무행정관리국장의 명령(영국지역의 재무행정관리국의 조세 및 관세 公報 90면),

1949년 3월 7일자의 세무대리자에 관한 니더작센州,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 쉘레스비히-홀슈타인州의 재무장관 및 한자동맹도시 함부르크 재무장관의 공동조세 및 관세부문에 대한 명령(공동조세 및 관세부문에 대한 조세 및 관세 公報 97면).

7. 1947년 6월 30일자의 대베를린 市長의 경제 및 재정부문에 있어 경제 및 세무대리직업종사자에 대한 試驗 및 허가에 관한 공시(대베를린 명령집 231면).

8. 1956년 12월 20일자의 잘란트에 대한 세무사 및 세무대리자 협회의 설립 및 名譽裁判權 및 職業裁判權에 관한 法律 제551호(잘

란트 官報 1661면),

1951년 5월 31일자(잘란트 官報 923면)의 1949년 7월 30일자(잘란트 官報 779면)의 세무사 및 개정의 허가에 대한 명령을 개정하는 명령의 문언에 있어 1949년 7월 30일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자의 허가에 관한 명령(잘란트 官報 779면).

② 州정부는 法規命令으로 本法에 의하여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조직의 정리를 규율할 권한을 갖는다. 잘란트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자협회의 관리업무는 이를 유지한다. 잘란트 州정부는 法規명령에 의하여 이 관리업무의 유지, 특히 공법인의 형식을 가진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의 회원자격, 정관 및 직무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을 정할 권한을 갖는다.

第167條 自由한자同盟都市 함부르크(Freie und Hansestadt Hamburg)¹⁰⁰⁾

자유한자동맹도시 함부르크市 정부는 관청의 관할권에 관한 本法의 규정을 함부르크市의 행정기구에 적합하게 변경할 수 있다.

第168條 法律의 效力發生(Inkrafttreten des Gesetzes)¹⁰¹⁾¹⁰²⁾

100) § 167 bish. Abs. 1 (Berlin-Klausel) aufgeh. durch G v. 25. 2. 1992 (BGBl. I S. 297).

101) Der Einigungsvertrag vom 31. 8. 1990 (BGBl. II S. 889, 970) enthält zum Steuerberatungsrecht folgende Bestimmungen:
„Treten Rechtsvorschriften auf dem Gebiet des Steuerberatungsrechts in dem in artikel 3 des Vertrages genannten Gebiet am 1. Januar 1991 in Kraft, sind bis zu diesem Zeitpunkt die Rechtsvorschrif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eiter anzuwenden.
Steuerberatungsgesetz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① 本法은 제166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本法의 공포 후 역월로 3개월이 되는 월의 1日부터 시행한다.¹⁰³⁾

② 제166조 제2항의 규정은 本法을 공포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4. November 1975(BGB1. I S. 2735),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18 des Gesetzes vom 25. Juni 1990(BGB1. 1990 II S. 518), sowie die auf Grund dieses Gesetzes erlassenen Rechtsverordnungen treten in dem in Artikel 3 des Vertrages genannten Gebiet unter gleichzeitiger Änderung des Steuerberatungsgesetzes am 1. Januar 1991 in Kraft."

102) Amtl. Anm.: Die Vorschrift betrifft das Inkrafttreten des Gesetzes in der ursprünglichen Fassung vom 16. August 1961.

103) Verkündet am 23. 8. 1961. Das Inkrafttreten der späteren Änderungen ergibt sich aus den jeweiligen Änderungsgesetzen.

第2部 稅務士法施行令(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Vorschriften über die Steuerberater, Steuerbevollmächtigte und Steuerberatungsgesellschaften(DVStB))

제정 1979. 11. 12(BGBI. I S. 1922)

개정 1991. 8. 19(BGBI. I S. 1797)

개정 1993. 4. 27(BGBI. I S. 512)

1975년 11월 4일 공포한 세무사법(BGBI. I S 2735) 제158조에 의거, 독일聯邦政府는 聯邦稅務士聯合會의 의견을 청취한 후 聯邦上院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施行令을 공포한다.

第1篇 稅務士試驗(Prüfungsordnung für Steuerberater und Steuerbevollmächtigte)

第1條 許可節次(Zulassungsverfahren)¹⁾

① 稅務士試驗의 허가 및 면제의 申請에 대하여는 재무행정을 관할하는 州최고관청(이하 “州최고관청”이라 한다)에 설치된 許可委員會가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에 다수의 許可委員會를 설치할 수 있다.

② 試驗許可申請書는 州최고관청이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多數決로써 결정한다. 決定結果는 권한있는 관청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 1 Abs. 3 Satz 2 neu gef durch VO v. 19. 8. 1991 (BGBI. IS. 1797).

第2條 許可委員會의 構成(Zusammensetzung des Zulassungsausschusses)

① 許可委員會는 委員長으로서 재무행정의 고위직 公務員 1인과 세무사 2인으로 구성한다. 허가위원회의 委員과 그 代理人은 州최고 관청에서 임명한다.

② 위원과 그 대리인의 任期는 3년으로 하되,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임기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그 후임자의 임기는 사임하거나 해임한 위원 또는 그 대리인의 殘餘 任期로 한다. 위원과 그 대리인이 세무사인 경우에는 임명 또는 해임 전에 세무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許可委員會의 위원은 신청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허가위원회의 委員은 직무상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公務員이 아닌 허가위원회의 委員은 위원회의 委員長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자신의 職務를 이행할 義務를 진다.

第3條 (削除)²⁾

第4條 試驗許可申請(Antrag auf Zulassung zur Prüfung)³⁾

① 試驗許可申請은 소정의 申請書에 의한다.

② 응시자는 申請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姓名, 주소 또는 主체재지, 수신인의 우편수신처, 職業 및 본 직으로 종사하는 직업의 場所

2. 설치 예정인 주된 事務所의 소재지

2) § 3 aufgeh. durch VO v. 19. 8. 1991(BGBI. I S. 1797)

3) § 4 Abs. 1 neu gef., Abs. 3 Nrn. 1, 2, 3 u. 4 geändert. sowie Abs. 5 angef. durch VO v. 19. 8. 1991(BGBI. I S. 1797)

3. 응시자가 과거에 試驗許可를 신청한 사실 여부와 그 申請書의 제출처

4. 응시자의 경제상태가 정당한지의 여부

5. 응시자의 國籍

6. 최근 12개월 이내에 刑事裁判에서 有罪判決을 받았는지 여부와 응시자에 대하여 刑事節次 또는 수사절차에 계류되어 있는지 여부. 職業裁判節次 및 조세기본법과 세무사법상의 過怠料節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7. 응시자가 免許 취득후 세무사업 이외의 업무를 계속 또는 인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의사가 있는 경우 그 업무내용

③ 申請書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身上 및 직업경력을 정확히 기재한 履歷書

2. 세무사시험의 法定豫備教育要件에 대한 시험성적표, 학위증, 자격증명서의 認證謄本

3. 응시자의 과거의 職業活動, 특히 聯邦 또는 州관청이 관할하는 조세분야의 업무종류와 범위가 기재된 證明書 및 현재까지 응시한 관련시험에 관한 증명서의 認證謄本

4. 응시자가 관할관청에 제출하기 위한 行蹟證明書의 교부를 신청하였다는 것과 이에 대하여 연방주민등록관청이 당해 관할관청국에 응시자에 관한 정보를 무제한 제공한다는데에 동의하였다는 신청관청에 대한 진술

5. 旅券寫眞 1매

④ 州최고관청은 응시자의 기재가 완전하고 정확한지를 심사한다. 州최고관청은 필요한 경우 許可委員會의 決定이 있기 전에 계속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 州최고관청이 응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적으로 세무사업무를 장기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의심

이 있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응시자에게 국공립병원 의사의 신체검사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재무행정을 관할하는 州최고관청은 제4항에서 열거한 업무와 權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급 재무감사국에 위탁할 수 있다.

第5條 그 밖의 證明(Sonstige Nachweise)⁴⁾

① 法 제37b조 제1항의 경우에는 응시자가 公認會計士 또는 선서會計士라는 사실 및 免許의 취소 또는 철회 또는 응시자에 대한 職業裁判節次가 개시될 만한 충분한 원인이 되는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공인회계사회의 證明書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法 제36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4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證明書 대신 최종 근무지 관청에서 발행한 재무행정청에서 근무한 업무종류와 그 기간에 관한 증명서를 申請書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法 제37b조의 제2항의 경우에는 申請書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1. 유럽共同體의 회원국(또는 유럽經濟공동체조약의 다른 締約國)의 國籍證明書

2. 응시자가 학위를 취득하였다는 것과 이로 인하여 응시자가 그 회원국(유럽共同體 또는 유럽經濟공동체조약의 다른 締約國)⁵⁾ 내에서 稅務代理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출생지 회원국의 관할관청의 證明書

4) § 5 Abs. 1 und Abs. 2 geänd. sowie Abs. 3 angef. durch VO v. 19. 8. 1991(BGBI. I S. 1797).

5) § 5 Abs. 3 Nrn. 1, 2 und 4 Klammerzusätze eingef. durch G v. 27. 4. 1993(BGBI. I S. 512; zum Inkrafttreten siehe anm. 1 auf S. 1.

3. 세무사업을 만 2년간 수행하였다는 證明書 및 1988년 12월 21일의 유럽經濟共同體 準則 제3조 b가 정한 (AB1. EG 1989 Nr. L 19 S. 16)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교육수료증명서

4. 응시자가 최소한 교육기간의 대부분을 회원국(유럽共同體 또는 유럽經濟공동체조약의 다른 締約國) 내에서 받았거나 또는 회원국(유럽經濟공동체조약의 다른 締約國)내에서 적어도 3년간의 직업교육을 수료하였다는 證明書. 다만 그 국가가 제3국의 학위증, 시험성적표, 기타의 자격증명서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法 제37b조 제2항 제3문에 따라 시험을 면제할 경우, 시험범위에 대한 규정 및 그 시험범위에서 습득된 지식에 관한 증명서

신청서와 첨부하여야 할 제 서류는 응시자가 작성하는 것일 때에는 독일어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의 서류는 認證翻譯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第6條 試驗許可(Zulassung zur Prüfung)⁶⁾

① 試驗許可는 그 許可 직후의 시험에 한하여 적용한다. 그 이후의 시험에 관하여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응시자가 許可委員會의 決定 당시 聯邦 또는 州재무관청이 관할하는 租稅분야에서 소정의 기간 동안 본직으로 종사하여야 한다는 豫備教育要件을 아직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그 豫備教育要件을 늦어도 필기시험 전까지 충족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許可를 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는 서류는 許可委員會가 정한

6) § 6 Abs. 2 Satz 1 geändert. durch VO v. 19. 8. 1991 (BGBl. I S. 1797).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7條 拘束力 있는 回答(Verbindliche Auskunft)⁷⁾

① 시험위원회는 試驗許可 또는 시험면제에 관한 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신청이 있으면 구속력이 있는 회답을 하여야 한다. 회답은 서면으로 한다. 회답에는 제3항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法的效果에 대한 회답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回答이 아직 충족되지 아니한 요건에 관련된 것일 때에는 후에 실현된 사실이 회답에서 적시한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에만 구속력이 있다.

③ 回答은 그 회답의 근거가 되는 法規가 개정된 때에는 效力을 잃는다.

④ 제1항의 절차에 대하여는 法 제39조 제1항과 本施行令 제1조 내지 제5조,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第8條 試驗免除申請(Antrag auf Befreiung von der Prüfung)

① 제4조는 응시자가 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면제신청을 할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 제2항 제3호를 변경하여 과거에 試驗許可 또는 試驗免除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응시자는 제4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제기한 證明書 대신에 다음 각호의 증명을 시험면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연방 또는 州 재무관청이

7) § 7 Abs. 1 Satz 1 neugef. und § 8 Abs. 2 Nrn. 1 und 2 geänd. durch VO v. 19. 8. 1991(BGBI. I S. 1797).

관할하는 조세분야에서 강의한 敎授의 종류 및 기간에 관하여 응시자가 소속한 또는 소속하였던 독일의 大學校 또는 專門大學의 증명서

2. 法 제3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聯邦 또는 州 재무관청이 관할하는 조세분야에서 근무한 업무의 종류와 기간에 관하여 다음에 계기한 者가 발행한 증명서

a) 최종 근무지 관청

b) 응시자가 독일聯邦下院의 정당에 고용된 경우에는 그 정당의 간부

이와 별도로 응시자는 과거 12개월 이내에 징계법에 의한 處罰을 받았는지 여부 또는 그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지의 여부 또는 과거 12개월 이내에 수사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관한 陳述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第9條 決定의 取消 및 撤回(Rücknahme und Widerruf der Entscheidung)

① 허가위원회가 시험종료 전에 試驗許可를 거부하였어야만 할 이유를 인정한 경우에는 시험위원회는 許可를 취소하여야 한다. 許可 후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許可를 철회하여야 한다.

② 허가위원회가 시험의 종료 전에 시험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事由를 인정한 경우에는 허가위원회는 許可를 취소할 수 있다. 許可 후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위원회는 許可를 철회할 수 있다.

③ 許可의 취소 또는 철회를 하기 전에 응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조 제3항 제2문은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응시자가 免許를 받지 아니한 경우 試驗免除의 取消 또는 철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第10條 試驗委員會(Prüfungsausschuß)⁸⁾

① 세무사시험은 州최고관청에 설치된 試驗委員會가 이를 행한다. 필요한 때에는 복수의 試驗委員會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세무사시험의 실시는 다른 州의 州최고관청에 설치된 시험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法 제37c조 제3항에 의하여 관할 州최고관청의 시험실시와 관련된 업무는 제1문에 의한 위탁의 경우에 다른 州의 州최고관청이 이를 대행한다.

③ 세무사시험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者로써 구성한다.

1. 재무행정청의 고위직 公務員 3人, 그 중 1인을 委員長으로 한다.

2. 경제계의 代表者 1人

3. 세무사 2人

州최고관청은 시험위원회의 委員 및 그 代理人을 임명한다.

④ 試驗委員 및 그 代理人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任期 만료전에 사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후임자의 任期는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한 委員 또는 그 代理人의 잔여임기로 한다. 세무사가 위원 또는 그 대리인인 경우에는 임면 또는 해임을 하기 전에 세무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경제계의 代表者가 위원 또는 그 대리인인 경우에는 임명 또는 해임을 하기 전에 경제행정을 관할하는 州최고관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多數決로써 결정한다.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委員長이 이를 결정한다.

⑥ 제2조 제3항과 제4항은 이를 준용한다.

8) § 10 Abs. 2 Satz 2 geänd., Abs. 3 Nr. 2 neu gef. und Abs. 4 Satz 4 angef. durch VO v. 19. 8. 1991 (BGBl. I S. 1797).

第11條 乃至 第13條 (削除)

第14條 試驗의 實施(Durchführung der Prüfungen)⁹⁾

① 州최고관청은 허가위원회가 許可한 응시자에 대하여 통상 매년 1회 시험위원회에 의한 試驗을 시행한다.

② 시험위원회의 試驗 및 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口述試驗에는 관할 州최고관청의 代表者 및 관할 세무사회 이사회의 代表者가 참가할 수 있다. 그 외의 者의 참석에 대하여는 시험위원회의 委員長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第15條 試驗의 評點과 平均點(Prüfungsnoten, Gesamtnoten)¹⁰⁾

① 각 試驗成績은 다음 6단계의 평점으로 평가한다.

평점 1. 秀 특히 우수한 성적(sehr gut)

평점 2. 優 평균을 현저하게 상회한 성적(gut)

평점 3. 美 모든 점에서 평균적 요구에 합치하는 성적
(befriedigend)

평점 4. 良 개별적인 결점을 제외하고 평균적 요구에 합치하는 성적(ausreichend)

평점 5. 不良 결점이 현저하고, 전체에 있어서도 불충분한 성적
(mangelhaft)

평점 6. 不可 완전히 불충분한 성적(ungenügend)

9) § 11 bis 13 aufgeh., § 14 Abs. 2 Sätze 2 und 3 neu gef. und durch VO v. 19. 8. 1991 (BGBl. I S. 1797).

10) § 15 Abs. 2 Satz 3 angef., § 16 Abs. 2 und Abs. 3 Sätze 1 und 2 neu gef., § 18 Abs. 3 Satz 2 eingef. und Satz 4 angef. durch VO v. 19. 8. 1991(BGBl. I S. 1797).

각 평점간의 중간단계를 두어 평가할 수도 있다.

② 平均點은 각 평점의 합계를 그 과목수로 나눈 것으로 한다. 결과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3자리는 절사한다. 평점 4.5는 良으로 한다.

第16條 筆記試驗(Schriftliche Prüfung)¹¹⁾

① 필기시험은 감독관의 감독하에 3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필기시험 중 2과목은 法 제37a조의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계기한 분야 내에서, 그리고 나머지 한 과목의 필기시험은 簿記 및 貸借對照表制度중에서 출제하여야 한다. 필기시험의 범위는 이외의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다.

③ 약식세무사시험(法 제37b조 제1항) 및 適性檢査(法 제37b조 제2항)의 필기시험은 2과목으로 한다. 각 필기시험은 法 제37a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계기한 분야 내에서 출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제2문은 이를 준용한다.

第17條 筆記試驗의 試驗召集 通知(Ladung zur schriftlichen Prüfung)

州최고관청은 필기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 응시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늦어도 제1시험일의 1개월 전에 그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第18條 筆記試驗의 答案作成(Fertigung der Aufsichtsarbeiten)

11) § 15 Abs. 2 Satz 3 angef., § 16 Abs. 2 und Abs. 3 Sätze 1 und 2 neugef. § 18 Abs. 3 Satz 2 eingef. und Satz 4 angef. durch VO v. 19. 8. 1991(BGBI. I S. 1797).

① 필기시험의 試驗問題는 州최고관청에서 출제한다. 州최고관청은 허용할 수 있는 보조수단 및 答案작성시간을 결정한다. 答案작성시간은 1과목당 최소 4시간, 최고 6시간으로 한다. 시험시간은 시험문제에 명기하여야 한다. 州최고관청은 答案에 응시자의 주소 및 서명 또는 受験番號를 기입하여야 하는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험문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試驗問題는 출석한 응시자에게 배포하는데 필요한 수량만큼 밀봉하여 각 시험당일에 감독관에게 배부한다.

③ 州최고관청은 신청이 있으면 신체장애자에게 필기시험의 答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그 장애에 상응하는 감경조치를 보장하여야 한다. 答案작성시간은 1시간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시험허가를 신청할 때 하여야 한다. 州최고관청은 국공립병원 의사의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第19條 監督(Aufsicht)

① 州최고관청은 答案작성이 언제나 감독하에 행하여 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시험일에 출석한 응시자의 身元을 확인한다. 감독관은 응시자의 면전에서 시험문제가 봉인되어 있는 봉투를 개봉하여 시험문제를 배포한다. 감독관은 시험시간의 시작과 종료를 알려야 하고, 答案은 늦어도 시험시간종료시까지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과 答案에는 반드시 응시자의 주소와 서명 또는 受験番號를 기입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시켜야 한다.

③ 감독관은 응시자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보조용구를 사용하거나 기타의 不正行爲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④ 감독관은 不正行爲를 이유로 응시자를 시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퇴장당한 응시자는 당해 시험일의 答案作成을 계속할 수 없다.

⑤ 감독관은 제출된 答案을 봉투에 넣어서 봉인하여야 한다.

第 20 條 筆記試驗 中の 行動(Verhalten während der schriftlichen Prüfung)

① 응시자는 필기시험의 答案을 스스로 작성하여야 한다.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다른 응시자와 이야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응시자에게 意思를 전달하여서도 아니된다. 응시자는 州최고관청이 제공하였거나 허용한 보조용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응시자는 시험시간의 종료시에 答案을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答案에는 응시자의 주소 및 서명 또는 受験番號를 기재하여야 한다. 草案 및 시험문제는 答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응시자는 시험 중의 행동에 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외부의 영향에 의하여 야기된 방해를 이유로 시험의 진행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늦어도 答案作成時間의 종료 전까지, 감독관에게 意思表示로써 이를 주장하여야 한다.

第 21 條 試驗의 抛棄(Rücktritt von der Prüfung)

① 응시자는 마지막 필기시험의 종료시까지 州최고관청 또는 시험감독관에 대하여 시험포기의 意思表示를 할 수 있다. 응시자가 1

과목만이라도 필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기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는 시험을 치르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포기의 경우에는 전체시험에 다시 응시하여야 한다.

第22條 筆記試驗에 관한 記錄(Niederschrift über die
Aufsichtsarbeit)

① 감독관은 각 시험일에 특히 다음사항을 기재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시험을 개시할 때 시험문제가 들어 있는 봉투를 개봉한 사실
2. 시험의 시작 및 종료시각
3. 적발한 부정행위 및 기타의 규칙위반
4. 결석한 응시자의 이름, 부정행위로 인하여 시험장에서 퇴장당한 응시자 또는 答案을 제출하지 아니한 응시자의 성명
5. 시험진행의 방해에 대한 異議提起(제20조 제4항) 및 이에 대한 措置
6. 응시자의 시험포기
7. 제출된 답안지의 封入 및 封印

第23條 不正行爲와 規則違反(Täuschungsversuche,
Ordnungsverstöße)¹²⁾

① 응시자가 不正行爲 또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보조용구를 사용하여 필기시험 성적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시험위원회는 그 答案을 “不可”로 평가할 수 있다.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응시자를 시험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② 중대한 不正行爲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위원회는 응시자를 시

12) § 23 Abs. 3 und § 24 neugef. durch VO v. 19. 8. 1991(BGBI. I S. 1797).

험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시험배제의 경우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한 경우에도 불합격으로 간주한다.

第 24 條 筆記試驗의 評價(Bewertung der Aufsichtsarbeiten)

① 시험위원회는 시험평가를 위하여 재무행정을 관할하는 州최고 관청의 제안에 따라 다수결로써 그 委員의 대리인을 筆記試驗試驗委員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각 필기시험의 答案은 최소 2명의 試驗委員이 독립하여 평가하여야 한다(제1시험위원 및 제2시험위원). 제1시험위원의 評價를 제2시험위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3시험위원을 정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③ 시험의 評價가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이 평가한 일치된 評點案을 시험위원회의 評點으로 한다. 評價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은 일치된 평점안에 합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④ 시험위원이 일치된 공통의 評點案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위원회가 평점을 결정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 외의 모든 경우에는 시험위원회가 평점을 결정한다.

⑥ 응시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답안은 “不可”로 평가하여야 한다.

第 25 條 筆記試驗의 結果와 口述試驗의 排除(Ergebnis der schriftlichen Prüfung, Ausschluß von der mündlichen Prüfung)¹³⁾

13) § 25 Abs. 2 geänd., Abs. 3 eingef. und bish. Abs. 3 Wird Abs. 4 durch VO v. 19. 8. 1991 (BGBl. I S. 1797).

- ① 필기시험에 대하여는 平均點을 기재한다.
- ② 응시자는 필기시험에 대한 平均點이 4.5를 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口述試驗을 배제하고,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③ 略式稅務士試驗(法 제37b조)의 경우에 응시자가 어느 한 과목의 필기시험에서도 최소한 “良”을 받지 못한 때에는 口述試驗을 배제한다.
- ④ 州최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응시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第 26 條 口述試驗(Mündliche Prüfung)¹⁴⁾

- ① 州최고관청은 구술시험에 응시할 응시자에 대하여 늦어도 그 2주전에 등기우편으로 그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구술시험은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주재한다. 위원장은 언제든지 시험에 관여할 권한이 있다.
- ③ 구술시험은 法 제37a조 제3항에 계기한 시험과목 중 하나에 대하여 응시자의 略述報告 및 6개의 시험단위로 구성한다. 試驗單位에서는 응시자에 대하여 시험범위 중에서 질문하여야 한다. 구술시험 기간동안 試驗委員會의 6인 委員이 각각 하나의 試驗單位를 맡아 활동한다.
- ④ 略式稅務士試驗(法 제37b조 제1항)에서 약술보고의 대상 및 응시자에 대한 질문은 法 제37a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계기한 시험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 ⑤ 適性檢査(法 제37b조 제2항)에서 구술의 대상 및 응시자에 대

14) § 26 Abs. 3 Satz 1 geänd., Abs. 4 neu gef. und Abs. 5 eingef., bish. Abs. 5 bis 7 werden Abs. 6 bis 8 durch VO v. 19. 8. 1991(BGBI. I S. 1797).

한 질문은 法 제37a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에 제기한 시험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⑥ 專門事項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는 응시자에게 시험개시 반시간 전에 3가지의 주제를 선택하게 하여야 한다.

⑦ 각 응시자의 시험시간은 9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외부의 영향에 의하여 야기된 방해를 이유로 구술의 준비과정 또는 구술시험의 진행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늦어도 구술시험의 종료전까지, 감독관 또는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意思表示로써 이를 주장하여야 한다. 제23조는 이를 구술시험에 준용한다.

第 27 條 口述試驗의 評價(Bewertung der mündlichen Prüfung)

① 구술시험에서 보고와 각 시험단위는 각각 별도로 평가한다.

② 評點은 試驗委員會가 확정한다.

③ 구술시험에 대하여는 하나의 총점만 기재한다.

第 28 條 試驗의 結果와 再試驗(Ergebnis der Prüfung, Wiederholung der Prüfung)

① 시험위원회는 구술시험의 종료직후 시험의 결과에 대하여 심의한다. 필기시험의 평균점과 구술시험의 총점을 합하여 2로 나눈 수치가 4.15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 시험은 합격으로 한다. 委員長은 응시자가 시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험합격 여부를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評點은 통지하지 아니한다.

② 州최고관청은 시험에 합격한 응시자에 대하여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再試驗에 대하여는 다시 試驗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 29 條 口述試驗의 不參(Nichtteilnahme an der mündlichen Prüfung)

① 口述試驗은 응시자가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구술시험을 보지 아니한다. 질병의 경우에는 요구에 따라 국공립병원 의사의 증명서로써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응시자가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口述試驗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후 시험을 볼 수 있다.

③ 응시자가 충분한 이유없이 구술시험을 결시한 때에는 不合格으로 한다.

第 30 條 口述試驗에 관한 記錄(Niederschrift über die mündliche Prüfung)

① 구술시험에 관하여는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1. 참석자의 姓名
2. 시험의 결과 및 응시자에 대한 통지
3. 기타 특이한 사항

② 기록의 抄本은 응시자의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第 31 條 筆記試驗答案의 保存(Aufbewahrung der Aufsichtsarbeiten)¹⁵⁾

15) § 31 neu gef., § 32 und 33 aufgeh. und § 34 Abs. 2 Satz 2 angef. durch VO v. 19. 8. 1991 (BGBl. I S. 1797).

필기시험의 答案은 시험종료 후 최소 5년간 州최고관청이 보관하여야 한다.

第 32 條 (削除)

第 33 條 (削除)

第 2 篇 稅務士 또는 稅務代理士의 任命
(Bestellung als Steuerberater oder
Steuerbevollmächtigter)

第 34 條 免許節次(Bestellungsverfahren)¹⁶⁾

- ① 免許는 신청에 의하여 부여한다.
- ② 免許官廳은 免許 전에 試驗許可를 위한 人的要件(法 제37조)이 존속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4조 제4항 제3문은 이들 준용한다.
-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免許를 거부하여야 한다.
 1. 응시자에 대하여 試驗許可를 거부, 취소 또는 철회를 하였어야 할 사실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
 2. 응시자가 職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法 제 57조 제4항)
- ④ 응시자에 대하여 試驗許可를 거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었던 사실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免許를 拒否할 수 있다.
- ⑤ 免許를 拒否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응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

16) § 31 neu gef., § 32 und 33 aufgeh. und § 34 Abs. 2 Satz 2 angef. durch VO v. 19. 8. 1991 (BGBl. I S. 1797).

다. 免許를 거부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시험을 면제받는 응시자의 免許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第35條 職業證書(Berufsurkunde)¹⁷⁾

職業證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면허관청의 名稱
2. 免許의 장소 및 일자
3. 응시자의 성명, 출생지 및 생년월일
4. 응시자가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免許를 받았다는 표시
5. 職印
6. 署名

응시자의 다른 직업의 표시는 職業證書에 이를 기재할 수 없다. 다만 대학의 학위 또는 國家가 수여한 칭호는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기재할 수 있다.

第36條 免許의 失效(Erlöschen der Bestellung)

① 免許의 포기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주된 事務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면허관청에 대하여 조서 또는 서면으로 意思表示를 하여야 한다.

② 法 제45조의 규정은 再免許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資格이 있는 者(法 제1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17) § 35 bish. Abs. 2 aufgeh., § 37 Abs. 2 eingef., bish. Abs. 2 wird Abs. 3; § 38 Abs. 1 Satz 3 neugef. durch VO v. 19. 8. 1991 (BGBl. I S. 1797).

第 37 條 免許의 取消 및 撤回(Rücknahme und Widerruf der Bestellung)¹⁸⁾

① 法의 적용범위 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法 제46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外國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② 法 제46조 제3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4조 제4항 제3문을 준용한다.

③ 法 제46조의 규정은 제36조 제2항에 제기한 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第 38 條 再免許(Wiederbestellung)¹⁹⁾

①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再免許 신청에 관하여는 면허관청이 이를 결정한다. 새로운 시험을 치를 필요는 없다. 신청에 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② 면허관청은 法 제37조의 요건이 충족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결정에 앞서 免許의 失效, 取消 또는 撤回 당시에 응시자가 소속된 세무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4조 제3항 내지 제5항은 이를 준용한다.

③ 다시 免許를 받지 아니하고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資格을 취득한 者(法 제154조 제1항 및 제3항)도 法 제48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再免許를 취득할 수 있다.

18) § 35 bish. Abs. 2 aufgeh. § 37 Abs. 2 eingef., bish. Abs. 2 wird Abs. 3; § 38 Abs. 1 Satz 3 neugef. durch VO v. 19. 8. 1991 (BGBl. I S. 1797).

19) § 35 bish. Abs. 2 aufgeh., § 37 Abs. 2 eingef., bish. Abs. 2 wird Abs. 3; § 38 Abs. 1 Satz 3 neugef. durch VO v. 19. 8. 1991 (BGBl. I S. 1797).

第 39 條 稅務士會에 대한 通知(Mitteilung an die
Berufskammer)

면허관청은 免許, 免許의 失效, 取消 또는 撤回 및 再免許에 관하여 관할세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第 3 篇 稅務法人의 認可(Anerkennung als
Steuerberatungsgesellschaft)

第 40 條 節次(Verfahren)²⁰⁾

① 세무법인의 認可申請은 그 법인이 소재하는 州최고관청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책임을 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者(法 제32조 제3항 제2문)의 姓名, 주소, 주된 事務所 및 그 밖에 법인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 者の 성명, 직업, 주소, 주된 事務所를 기재하여야 한다(法 제50조 제2문 및 제3문).

② 재무행정을 관할하는 州최고관청은 법인의 定款을 근거로 法 제32조 제3항 제2문에 따라 세무사가 회사경영의 책임자라는 증거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및 세무법인의 認可에 대한 法 제49조 내지 제53조의 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한다.

③ 세무법인의 認可申請에 대하여 결정을 하기 전에 세무사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認可要件이 충족된 때에는 州최고관청은 제41조가 규정한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세무법인을 인가한다. 商業登記簿에 등기를 하기전에 재무행정을 관할하는 州최고관청은 먼저 商業登記簿에 등기될 때까지 모든 認可要件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

20) § 40 neugef. sowie § 41 bish. Abs. 2 aufgeh. durch VO v. 19. 8. 1991(BGBI. I S. 1797).

여야 한다. 認可申請을 각하한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第41條 認可證書(Anerkennungsurkunde)

認可證書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가관청의 名稱
2. 認可의 장소 및 일자
3. 법인의 商號 및 소재지
4. 세무법인으로 認可하였다는 표시
5. 職印
6. 署名

認可證書에는 商號 외에 법인의 다른 名稱을 기재할 수 없다.

第42條 稅務士會에 대한 通知(Mitteilung an die
Berufskammer)

州최고관청은 認可와 인가의 失效, 取消 및 撤回을 관할 세무사회에 通知하여야 한다.

第4篇 農業帳簿管理所의 名稱 使用權 賦與
(Verleihung der Berechtigung zur Führung der
Bezeichnung "Landwirtschaftliche Buchstelle")

第43條 申請, 특별한 專門知識의 證明(Antrag, Nachweis der
besonderen Sachkunde)²¹⁾

21) § 43 Abs. 2 und 3 neu gef., Abs. 4 bis 10 angef. durch VO v. 19. 8. 1991 (BGBl. I S. 1797).

① 농업장부관리소의 명칭사용권 부여신청은 申請人의 주된 事務所의 재무행정을 관할하는 州최고관청(부여관청)에 하여야 한다. 신청의 拒絶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申請書는 신청인의 지금까지의 직업상 經歷과 職業活動에 대한 정확한 기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口述試驗(法 제44조 제2항 제1문)은 다음 과목을 포함한다.

1. 농림업의 과세상 特殊性
2. 農地特別相續權(농지단독상속권) 내지 민법상 相續規定
3. 농지임대차권
4. 不動產去來法
5. 농업금융제도의 기초
6. 會計制度 및 통계를 포함한 농업경제학

각 申請人에 대한 시험시간은 6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부여관청은 專門知識委員會의 위원(法 제44조 제2항 제2문) 및 그 代表者를 임명하고, 委員 및 그 代表者의 任期는 3년으로 한다. 委員 및 그 代表者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委員 또는 그 代表者가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 후임자의 任期는 사임하거나 해임된 者의 잔여임기로 한다. 任命 또는 해임을 하기 전에 농업재무행정을 관할하는 州최고관청이 대표자인 경우에는 그 관청의 관할 세무사회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그 세무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은 이를 준용한다.

⑤ 부여관청은 口述試驗에 응시하는 申請人에게 늦어도 2주 전에 이에 대한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口述試驗은 전문지식위원회 委員長이 이를 주재한다. 委員長은 언제든지 시험에 관여할 권한이 있다.

⑦ 전문지식위원회는 口述試驗 후 즉시 협의하여 평가하고, 多數決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시험결과는 위원장이 시험에 이어 바로 신청인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점수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⑧ 口述試驗 면제신청서에는 法 제44조 제2항 제3문이 정하는 해당 교육 및 실무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여관청은 신청서와 證明書を 평가하기 위하여 농업재무행정을 관할하는 州최고관청 및 신청인을 관할하는 세무사회에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⑨ 法 제44조 제2항 제3문이 정한 교육은 제3항에 계기한 특별한 전문지식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특히 다음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

1. 농과대학 졸업
2. 농업전문대학 졸업
3. 그 밖에 졸업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 교육으로서 제1문이 정하는 교육

개별 참가자의 졸업시험 또는 기타 학업성적증명이 없는 전문세미나 또는 教育課程의 이수능 專門知識이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⑩ 신청인이 口述試驗을 면제받기 위하여는 해당 교육 외에 신청을 하기 전에 적어도 5개의 帳簿를 작성하는 농림업 經營業體에서 3년간 세무상담을 행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세무상담은 法 제58조에 따라 종업원의 地位에서 한 것까지 포함한다. 세무상담에 관한 증명은 申請人이 각 농림업 경영업체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 그 業體의 명칭을 나타내고, 언제부터 개별적인 세무상담을 개시하였는지 및 그 業體가 帳簿를 작성하였는지의 여부를 통지하면 충분

하다.

第 44 條 賦與와 賦與證書(Verleihung, Vereihungsurkunde)²²⁾

① 농업장부관리소의 名稱 使用權의 부여는 證書의 교부로써 한다.

② 證書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부여관청의 名稱
2. 證書수령인의 姓名 및 직업명
3. 證書에 표시된 者에게 職業名에 부가하여 농업장부관리소의 명칭을 부가하여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뜻

4. 賦與의 장소 및 일자

5. 職印

6. 署名

③ (削除)

第5篇 職業登錄簿(Berufsregister)

第 45 條 登錄簿 管理機關(Registerführende Stelle)²³⁾

① 職業登錄簿는 관할 세무사회가 이를 관리한다. 세무사회는 職業登錄簿의 관리를 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協議會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모든 職業登錄簿상의 登錄 및 抹消는 관계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면허관청 또는 인가관청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22) § 44 Abs. 3 aufgeh. durch VO v. 19. 8. 1991 (BGBl. I S. 1797).

23) § 45 Abs. 2 neu gef. und § 46 Nr. 1 Buchst. f eingef. durch VO v. 19. 8. 1991 (BGBl. I S. 1797).

登録 및 抹消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세무사, 세무대리사 또는 세무법인의 면허 후 최초의 登録과 면허 또는 認可의 취소 또는 철회의 경우 면허 또는 인가의 抹消,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한 登録

2. 세무사, 세무대리사의 姓名 및 세무법인의 商號 및 법인형식의 변경

3.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주된 事務所 또는 세무법인의 주소의 登録簿 관할구역 이외로의 이전

③ 職業登録簿의 열람은 正當한 利害關係가 있는 모든 者에게 허용한다.

第46條 登録(Eintragung)²⁴⁾

職業登録簿에는 다음 사항을 등록한다.

1.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가 登録簿를 관리하는 지역(登録簿 관할 구역) 내에서 免許를 받은 경우 또는 그 주된 事務所를 登録簿 관할 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기재한 사항

- a)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
- b) 면허일자 및 면허부여 관청
- c) 농업장부관리소의 名稱使用權
- d) 주된 事務所의 주소
- e) 주된 事務所 이외의 모든 사무소 및 그 사무소 소장의 姓名
- f) 法 제56조에 정한 送達代理人의 姓名 및 주소

또한 a) 및 c) 내지 f)에 기재한 사항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

2. 登録簿 관할구역에서 認可를 받았거나 그 주소를 登録簿 관할

24) § 45 Abs. 2 neu gef. und § 46 Nr. 1 Buchst. f eingef. durch VO v. 19. 8. 1991(BGBI. I S. 1797).

구역으로 이전한 세무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에 제기한 사항

- a) 商號 및 법인형식
- b) 세무법인의 인가, 일자 및 인가를 한 州최고관청
- c) 농업장부관리소의 名稱使用權
- d) 주소 및 우편수신처
- e) 法人의 경우 법적 대표권이 있는 機關의 구성원의 姓名 및 인적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社員의 姓名
- f) 주된 사무소 이외의 사무소 및 그 사무소 소장의 姓名

3. 登錄簿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주된 사무소 이외의 사무소의 경우에는 다음에 제기한 사항

- a)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주된 사무소의 名稱 및 場所
- b) 농업장부관리소의 名稱使用權
- c) 주된 사무소 이외의 사무소의 주소
- d) 주된 사무소 이외의 사무소의 사무소 소장의 성명

또한 a) 내지 d)에 제기한 사항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

4. 登錄簿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세무법인의 주된 사무소 이외의 사무소의 경우에는 다음에 제기한 사항

- a) 세무법인의 商號, 주소 및 法人形式
- b) 농업장부관리소의 名稱使用權
- c) 주된 사무소 이외의 사무소의 주소

또한 a) 내지 d)에 제기한 사항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

第47條 抹消(Löschung)

① 職業登錄簿에서 抹消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의 경우에는 다음에 제기한 사항

- a) 免許의 失效 또는 더이상 取消請求의 여지가 없는 免許의 취

소 또는 철회

b) 주된 사무소의 登錄簿 管轄구역 이외로 이전

2. 세무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에 계기한 사항

a) 認可의 失效 또는 더이상 取消請求의 여지가 없게 된 免許의
취소 또는 철회

b) 주소의 登錄簿 管轄구역 이외로 이전

3. 주된 사무소 이외의 사무소를 폐쇄한 경우 그 사무소

② 농업장부관리소의 名稱使用權에 관한 登錄은 세무법인이 法
제44조 제3항이 규정한 要件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이를 말소하여
야 한다.

第48條 報告義務(Mitteilungspflichten)

① 職業登錄簿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에 계기한 者가 관할
세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6조 제1호의 경우 등록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

2. 제46조 제2호의 경우 등록된 세무법인의 법적 대표권이 있는
機關의 구성원 또는 대표권이 있는 社員

3. 제46조 제4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이외의 사무소를 설치한 세
무사 또는 세무대리사

4. 제46조 제4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이외의 사무소를 설치한 세
무법인의 법적 대표권이 있는 機關의 구성원 또는 대표권이 있는 社員

② 職業登錄簿에서 抹消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에 계기한 者가 관
할 세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7조 제1항 제1호 b의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

2. 제47조 제1항 제2호 b의 경우에는 그 세무법인의 법적 대표권이 있는 機關의 구성원 또는 대표권이 있는 社員

3. 제47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한 者

4. 제47조 제2항의 경우는 그 세무법인의 법적 대표권이 있는 機關의 구성원 또는 대표권이 있는 社員

第 49 條 農業帳簿管理所의 名稱使用權이 있는 團體, 社團 및 法人 (Vereine, Personenvereinigungen und Körperschaften, die zur Führung der Bezeichnung "Landwirtschaftliche Buchstelle" befugt sind)²⁵⁾

① 職業登錄簿에는 또한 다음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法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에 부가하여 농업장 부관리소의 名稱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 團體 및 社團으로서 그 주소가 登錄簿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

2. 法 제4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에 부가하여 농업장 부관리소의 名稱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 公法上的 法人 및 社團의 장 부관리소로서 그 주소가 登錄簿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登錄은 다음의 경우에 이를 말소한다.

a) 法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團體 또는 法 제44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社團 또는 法人이 해산된 경우

b) 法 제44조 제4항 또는 제5항이 제기한 要件을 갖추지 못한 경우

c) 法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團體의 주소 또는 法 제

25) § 49 Überschrift, Abs. 1 Nr. 1, Abs. 2 Buchst. a und c sowie Abs. 3 Satz 1 geändert durch VO v. 19. 8. 1991 (BGBl. I S. 1797).

44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社團 또는 法人의 장부관리소를 登錄簿 管轄구역 이외로 이전하는 경우

③ 등록 또는 말소는 團體, 社團 또는 法人의 대표권이 있는 者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抹消는 職權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第 50 條 申告義務(Anzeigepflichten)

① 세무법인의 법적 대표권이 있는 機關의 구성원 또는 대표권이 있는 社員은 定款을 변경할 경우, 그 決議를 한 후 즉시 職業登錄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세무법인의 법적 대표권이 있는 機關의 구성원 또는 대표권이 있는 社員은 매년 1월에 社員의 姓名, 職業 및 주소, 소유주식, 기본출자액 또는 資本出資額을 기재하고 당해 대표권이 있는 機關의 구성원 또는 대표권이 있는 社員이 서명한 정·부 2통의 社員名簿를 職業등록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登錄簿를 관리하는 事務所는 名簿의 부분을 管轄 州최고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년의 名簿 제출 후 社員의 身上 및 그 관여범위에 관하여 변경이 없는 때에는 그 뜻을 申告하면 충분하다.

第 6 篇 職業責任保險

(Berufshaftpflichtversicherung)

第 51 條 保險義務(Versicherungspflicht)²⁶⁾

① 독립적 세무사, 세무대리사 및 세무법인은 그 職業활동(法 제

26) Sechster Teil (§ 51-57) eingef. durch VO v. 19.8.1991 (BGBl. I S. 1797)

33조, 제57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으로 인하여 발생할 재산상의 責任危險에 대하여 保險에 가입하고, 免許 또는 認可期間 동안 그 保險을 유지하여야 할 義務가 있다. 民法 제278조 또는 제831조에 따라 保險契約者가 책임을 져야 할 財産的 損失에 대하여도 保險에 의한 담보를 하여야 한다.

② 保險契約은 유럽共同體 회원국(또는 유럽經濟공동체조약의 다른 締約國)²⁷⁾ 내에 주소를 가진 保險者 또는 독일기본법의 적용범위 내에 支店이 있는 保險者와 이를 체결하여야 한다.

第 52 條 最低保險金額(Mindestversicherungssumme)²⁸⁾

① 최저保險金額은 1 保險事故 당 50만 독일 마르크로 한다.

② 自己留保는 3천 독일 마르크까지 허용한다. 제3자가 손해를 주장하여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免許 또는 세무법인의 認可가 실효하는 경우에는 自己留保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1 보험년도에 발생할 모든 손해에 대하여 년 최고 補償限度를 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은 최소 200만 독일 마르크로 한다.

第 53 條 기타의 保險契約의 內容(Weiterer Inhalt des Versicherungsvertrages)

① 保險契約의 내용은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은 普通保險約款과 일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1. 補償請求權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각 義務違反을 保險에 의하여

27) § 51 Abs. 2 Klammerzusatz eingef. durch G v. 27. 4. 1993 (BGBI. I S. 512); zum Inkrafttreten siehe Anm. 1 auf S. 1.

28) Sechster Teil (§ 51-57) eingef. durch VO v. 19. 8. 1991 (BGBI. I S. 1797).

담보한다는 것

2. 일반적 代理人(法 제69조), 業務清算人(法 제70조), 또는 業務受託者(法 제71조)의 경우에는 그 任期 동안 그리고 代理人의 경우에는 (法 제145조) 그 직업활동 또는 대리활동 금지기간 동안 계속하여 保險에 의한 擔保가 유지된다는 것

② 保險者는 保險契約에 따라 法 제67조가 정한 관할 세무사회에 保險契約의 시기와 종기, 解約告知 및 본시행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험에 의한 보호를 침해하는 保險契約의 變更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第 54 條 다른 職業責任保險의 認可(Anerkennung anderer Berufshaftpflichtversicherungen)²⁹⁾

保險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개인이 동시에 公認會計士 또는 선서회계사로 임명되거나 公認會計士法 제131b조 제2항 제131f조 제2항에 의하여 臨時免許를 받은 경우 또는 保險에 가입할 義務가 있는 法人이 동시에 會計法人 또는 선서회계법인의 認可를 받은 때에는 保險契約締結義務는 그 직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職業責任保險을 체결하면 충분하다.

第 55 條 免許前 保險契約締結의 證明(Nachweis des Versicherungsabschlusses vor der Bestellung)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免許를 신청하여 독립적으로 그 職業活動을 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면허관청에 본시행령에 합치하는 職業

29) Sechster Teil (§ 51-57) eingef. durch VO v. 19. 8. 1991 (BGBl. I S. 1797).

責任保險의 체결을 保險者의 確認書로써 이를 증명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保險者가 責任을 부담한다는 잠정적인 付保의 確約書を 제출하여야 하고, 保險의 철회는 지체없이 면허관청과 세무사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잠정적인 付保의 確約書を 제출한 경우에는 免許를 취득한 후 지체없이 관할세무사회에 保險者의 確認書 또는 保險證券의 認證謄本으로써 職業責任保險의 체결을 증명하여야 한다.

第 56 條 變更에 대한 申告(Anzeige von Veränderungen)³⁰⁾

保險義務者는 保險契約의 종료, 해약고지 및 본시행령이 정한 보험에 의한 보호를 침해하는 保險契約의 변경, 保險者의 변경, 職業活動形式의 변경에 의한 保險義務의 개시와 종료, 잠정적인 付保의 確約의 철회를 法 제67조에 따라 관할 세무사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第 57 條 稅務士會의 監督義務(Überwachungspflicht der Steuerberaterkammern)³¹⁾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체결한 職業責任保險契約이 본시행령의 규정에 합치하지 아니하고 또 세무사회가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본시행령이 정하는 職業責任保險과 일치하는 保險契約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세무사회는 재무행정을 관할하는 州최고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세무대리사의 職業責任保險이 부적당한 때에는 상

30)Sechster Teil(§ 51-57) eingef. durch VO v. 19. 8. 1991 (BGBl. I S. 1797).

31)Sechster Teil(§ 51-57) eingef. durch VO v. 19. 8. 1991 (BGBl. I S. 1797)

급 재무감사국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여 제1문을 준용한다.

第7篇 經過規定 및 最終規定 (Übergangs- und Schlußvorschriften)

第58條 經過規定(Übergangsregelung)³²⁾

① 본시행령이 效力을 발생하기 전에 試驗許可를 신청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試驗許可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② 본시행령이 效力을 발생하기 전에 개시된 시험에 대하여는 시험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第59條 施行(Inkrafttreten)

본시행령은 공포한 다음날 부터 시행한다. 본시행령의 效力發生과 동시에 聯邦法令公報 제3편 정리번호 610-10-1로 공포된 수정안으로서 1973년 12월 5일자 의 법규명령에 의한 세무사법시행령개정령(聯邦法令公報 제1편 1816면)은 그 效力을 상실한다.³³⁾

32) Bish. Sechster Teil wird Siebter Teil, bish § 51 und 53 werden 58 und 59. bish. § 52(Berlin-Klausel) aufgeh. durch VO v. 19. 8. 1991 (BGBl. I S. 1797).

33) Verkündet am 15. 11. 1979; die Änd VO v. 19. 8. 1991 trat am 29. 8. 1991 in Kraft.

韓國租稅研究所 研究委員 名單

職 位	姓 名	略 歷
所 長	申 相 式	韓國稅務士會 會長・國會議員
研 究 委 員	郭 泰 元	西江大 教授・經博
"	金 東 建	서울大 教授・經博
"	宋 雙 鍾	서울市立大 教授・法博
"	吳 載 善	稅務大學 教授・經博
"	尹 建 永	延世大 教授・經博
"	尹 桂 燮	서울大 教授・經營博
"	李 愚 澤	漢陽大 教授・經營博
"	李 哲 松	漢陽大 教授・法博
"	李 泰 魯	서울大 教授・法博
"	鄭 泰 仁	江陵大 教授・經營博
"	崔 洸	韓國外國語大 教授・經博
"	崔 明 根	서울市立大 教授・法博
"	黃 厦 周	前 國稅審判所長
"	權 海 浩	稅務士・法博
"	金 冕 圭	稅務士
"	金 完 石	江南大 教授・法博
"	明 炯 植	稅務士・圓光大 教授・法博
"	徐 順 鍾	稅務士・法博
"	李 元 錫	稅務士
"	李 承 文	稅務士
"	李 澤 龍	稅務士・明知專門大 教授・經營博
"	張 珩 鍾	稅務士・經營博
"	趙 映 來	稅務士・經營博
"	洪 學 杓	稅務士・建國大 教授・行政博

■ 研究叢書案内

① 資本市場 育成을 위한 租稅政策方向

宣 炳 完 1987. 3

李 愚 澤

② 特別消費稅制의 合理的 改善方向

金 完 淳 1987. 3

金 完 石

③ 租稅確定의 適正節次 保障에 관한 研究

崔 明 根 1988. 2

金 冕 圭

李 承 文

④ 附加價值稅의 政策課題와 改善方向

崔 洸 1988. 3

李 愚 澤

⑤ 租稅審判制度의 合理的 改善方案

李 哲 松 1988. 4

金 完 石

〔6〕 韓國稅制의 合理化에 관한 研究

金 東 建 外 1988. 7

〔7〕 稅務士制度의 發展方向

申 東 雲 外 1988. 10

〔8〕 附加價值稅 納付稅額計算과
課稅特例制度의 改善에 관한 研究

崔 明 根 外 1991. 11

〔9〕 土地稅制의 長期的 改編方案에 관한 研究

金 東 建 外 1993. 8

〔10〕 相續課稅의 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李 鎭 淳 1994. 10

李 哲 松

■ 研究叢書案内

[11] 租稅行政의 適正節次와 合理化에 관한 研究

李 愚 澤 1995. 3

[12] 租稅制裁法制的 再整備

崔 明 根 1995. 3

[13] 財産課稅行政의 民主的 發展方向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1995. 3

[14] 納稅者의 權益保障 提高에 관한 研究

崔 明 根 1996. 2

① 西獨의 稅務士法에 관한 研究

李 承 文 1987. 2

② 主要國의 法人所得課稅制度

吳 赫 柱 1987. 3

李 愚 澤

李 哲 松

權 海 浩

③ 主要國의 個人所得課稅制度

吳 赫 柱 1988. 3

崔 炳 哲

李 哲 松

權 海 浩

④ 主要國의 相續課稅制度

崔 炳 哲 1989. 3

李 哲 松

權 海 浩

吳 赫 柱

■ 研究調查資料案內

⑤ 主要國의 消費課稅制度

金 文 守 1993. 4

崔 炳 哲

李 哲 松

權 海 浩

⑥ 獨逸의 稅務代理制度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1994. 10

李 鍾 永

⑦ 獨逸의 租稅基本法과 財政法院法

李 愚 澤 1995. 3

張 台 柱

⑧ 日本의 稅理士制度에 관한 研究

權 海 浩 1995. 6

⑨ 獨逸會社法

李 炯 珪 1996. 1

10 獨逸稅務士法

崔 竣 璿 1996. 3
李 承 文

調 査 報 告 書
第10輯(1996. 3)

獨逸稅務士法

1996年 3月 25日 印刷
1996年 3月 27日 發行

著 者 崔竣璿・李承文
發行人 申 相 式
發行處 韓 國 稅 務 士 會

137-073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97-16
電話(代) 587-6021
登錄：1988年 11月 11日(바 1184)

〈非賣品〉